#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 학부모 및 학생을 위한 정보
# 2015-2016

2015 년 7 월 1 일

학부모님께,

지난 몇 년,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각 학생에게 관련된 정보가 들어 있는 “학부모 및 학생들을 위한 정보”의 인쇄본을 제공해 왔습니다. 금년, 그 제공되었던 회보는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웹사이트에서 가용하며 각 학생은 서명 양식의 삽입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양식 1-7 이 포함된 삽입지는 서명과 함께 작성하여 학생의 학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양식 1 (학부모 통고 요건 수령확인), 양식 2 (일관적 불만제기절차 연례 통고 수령확인) 및 양식 3 (전자정보 서비스 (EIS) 사용자/ 학부모 또는 후견인 책임 약정)은 서명과 함께 작성하여 학생의 학교 사무실에 제출할 것이 요구됩니다

양식 4 (24 시간 약 복용 스케줄), 양식 5 (수업 면제 요청), 양식 6 (학생 이름, 사진, 웹페이지 상의 비디오 영상 및 다양한 출판물의 공공 사용에 대한 허가서), 양식 7 (군대, 고용주, 대학에 대한 11/12 학년생 정보제공 금지 요청)이 귀 자녀에게 해당되는지를 검토하시고, 해당되는 양식이 있는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서명과 함께 작성하여 학생의 학교 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십시요.

첨부된 양식들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www.gusd.net/parenthandbook 을 접속하여 “학부모 및 학생들을 위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요.

감사합니다.

Kelly King, 교육학 박사
부교육감
교육 서비스부

# 글렌데일 통합 교육구

223 North Jackson Street
Glendale, California 91206
818-241-3111

# 학부모 및 학생을 위한 정보

2015-2016

본 삽입지를 받고 30 일 이내에 해당되는 동의 양식들을 작성하고 서명하신 후 자녀의 학교 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십시요.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223 North Jackson St., Glendale, California 91206-4380
전화번호: (818) 241-3111, 내선 208 * 팩스: 818-543-0716
교육 서비스부

2015년 7월 1일

학부모님께,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모든 학급들을 위해 유능한 유자격 교사들의 확보에 헌신하며 매 학년 및 매 학과목에 최고의 교사를 모집, 채용하고 보유하려고 노력합니다.

연방 정부 타이틀 1 기금 수령자로서 당 교육구는 연방정부 교육 개혁법인 ***무 낙오생 법***에 규정된 대로 2005-2006 학사년 말까지 ***모든*** 학교의 ***모든*** 교사들을 능력있는 유자격자로 확보할 것이 기대되었습니다. 추가로, 타이틀 1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부모는 자녀의 학급 교사의 전문적 자격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고 받아볼 권리가 있으며 또한 학급 수업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보조 교사의 전문적 자격에 관한 정보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타이틀 1 학교에 다니고 자녀 교사의 자격에 관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자녀 학교의 교장에게 연락하십시요.

자녀의 교육에 대한 귀하의 관심 및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Kelly King, 교육학 박사
부교육감
교육 서비스부

# 목차


페이지

**양식**

양식 1 – 학부모 통고요건 확인 ..... 1
양식 2 –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 연례 수취확인 ..... 1
양식 3 – 전자 정보 서비스(EIS) 사용자/학부모 또는 후견인 책임 약정 ..... 2
양식 4 – 24 시간 약 복용 프로그램 ..... 3
양식 5 – 수업 면제 요청 ..... 3
양식 6 – 학생 이름, 사진, 웹페이지 상의비디오 영상 및 다양한 출판물의 공공 사용에 대한 허가 ..... 4
양식 7 – 군대, 고용주, 대학에 대한 고교 11, 12 학년생 정보제공 금지 서한 및 보류 요청 ..... 5

**학부모 및 학생의 권리 및 책임**

비차별 대우 진술 ..... 6
보건, 가족 생활 및 성 교육 ..... 6
가주 보건 서비스 ..... 7
뇌진탕 정보지 ..... 10
학생 보험 ..... 10
거주지 학교 선택 ..... 11
학부모 참여 ..... 12
영어학습자 (ELL) 정보 ..... 12
학교 출석 ..... 13
학생 품행 ..... 14
긍정적인 행동 중재 및 지원(PBIS) ..... 17
양육권 법 통지 ..... 17
흡연방지 교육(TUPE) ..... 18
대안 학교 ..... 18
성희롱 ..... 18
일관적 불만제기 방침 절차 ..... 20
예의 방침 ..... 25
학교 책임보고서(SARC) ..... 26
학생 사진 및 비디오 촬영 ..... 26
가주 고교 졸업시험(CAHSEE) ..... 26
건강한 학교 ..... 27
인터넷 접속/전자정보 서비스 및 수용 가능한 사용 방침 ..... 28
인터넷 안전 정보 ..... 31
가주 교육법 학부모 통고요건 ..... 32
학교 관련 비상사태 및 학교 안전 ..... 34

# 양식 1 – 학부모 통고요건 수취확인

# 2015-2016

*양식 1 은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학생들의 학부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하여 학생의 학교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학생 이름(*정자로 기재*) | 학번 | 학교 | 학년 |
|---|---|---|---|

본 양식을 30 일 이내에 서명하여 귀 자녀의 학교에 제출하여 주십시요. 이는 가주 법(교육법 §48982)에 규정된 대로 귀하께서 학부모 및 학생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해 통고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서명은 어떤 특정 프로그램의 참여에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귀하께서 법이 요구하는 대로 어떤 규정에 대해 통고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학부모 또는 후견인의 서명 | 날짜 |
|---|---|

**모든 학생들은 본 통고서의 수취를 확인하는 부모/후견인의 서명을 받은 후, 이 부분을 제출해야 합니다.**

==========✂==========

# 양식 2 – 일관적 불만제기절차 연례 통고 수취확인

# 2015-2016

***양식 2 는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학생들의 학부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하여 학생의 학교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학생 이름(***정자로 기재***) | 학번 | 학교 | 학년 |
|---|---|---|---|

본 양식을 30 일 이내에 서명하며 자녀의 학교에 제출하여 주십시요. 이는 귀하께서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윌리엄스/발렌주엘라에 대한 연례 통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서명은 어떤 특정 프로그램의 참여에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귀하께서 법이 요구하는 대로 어떤 규정에 대해 통고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학부모 또는 후견인의 서명 | 날짜 |
|---|---|

**모든 학생들은 본 통고서의 수취를 확인하는 부모/후견인의 서명을 받은 후, 이 부분을 제출해야 합니다.**

# 양식 3 - 전자정보 서비스(EIS)
# 사용자/학부모 또는 후견인 책임 약정
# 2015-2016

본인은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의 전자정보 서비스 사용에 대한 특정 학교 지침 뿐만 아니라 교육구의 규칙 및 규정을 이해하며 준수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본인은 이들 규칙과 규정의 위반은 비윤리적이며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음을 이해합니다. 아울러 본인은 교육구의 전자정보 서비스 사용의 한 조건으로서 교육구는 어느 때든 본인이 교육구의 정보 시스템 장비를 통해 사용하는 자료들(소프트 웨어, 주변기기 등)을 검토하고 교육구 캠퍼스에서 사용한 본인 개인의 컴퓨터를 조사하고 장비와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특정 사용의 적절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본인의 활동을 주시•점검할 권리를 보유한다는 것을 이해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본인이 어떤 규칙을 위반할 경우, 본인의 전자정보 시스템 사용 특전이 박탈되며 교육구 및/또는 학교의 훈육조치 및/또는 적절한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학생의 학부모 또는 후견인으로서 본인은 본인의 아이가 교육구 컴퓨터 및 전자정보 서비스의 조건, 규칙 및 적절한 사용에 대해 설명한 전자정보 서비스(EIS)의 적절한 사용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음을 이해합니다. 이 서비스는 교육용으로 마련된 것이며 글렌데일 교육구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자료의 차단을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했음을 이해합니다.

| 학생 이름(*정자로 기재*) | 학번 | 학교 | 학년 |
|---|---|---|---|

학부모 또는 후견인의 서명 _____ 날짜 _____

**모든 학생들은 본 통고서의 수취를 확인하는 부모/후견인의 서명을 받은 후, 이 부분을 제출해야 합니다.**

# 양식 4 – 24 시간 약 복용 스케줄
# 2015-2016

*양식 4 는 집에서 약을 복용하는 모든 아동의 부모가 작성하도록 요청되며 출석 학교의 보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_____ _____ _____ _____
학생 이름(*정자로 기재*) 학번 학교 학년

| | *약명* | *복용량* | *복용 목적* | *복용 시간* |
|---|---|---|---|---|
| 1. | | | | |
| 2. | | | | |

_____ _____ _____
처방 의사 이름 주소 전화번호

본인은 본인이 아는 한 상기 정보가 정확함을 보증합니다. 본인은 학교 간호사가 상기 약의 가능한 효능, 부작용, 복용 누락 또는 과다 복용의 징후와 증세에 관하여 아이의 주치의와 상의하는 데 동의합니다.

_____ _____
학부모 또는 후견인의 서명 날짜

_____ _____
주소 전화번호

학교에서 약을 복용해야 할 경우, 귀하의 의사는 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HS25, "학교시간 동안의 약복용 요청(Request For Medication to be Taken During School Hours)"** 이라는 양식을 작성하고 서명해야 하며 약, 복용량 및 시간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요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 양식 5 – 수업 면제요청
# 2015-2016

*양식 5 는 인간의 생식을 다루는 학습 단원에서 자녀의 수업 면제를 원하는 학부모만이 작성하여 학교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은 본인의 아이가

_____ _____ _____ _____
학생 이름(*정자로 기재*) 학번 학교 학년

주제(topics): _____를(을) 다루는

학과(courses): _____에서 수업 면제되도록 요청합니다.

본인은 상기 수업 면제된 학생들은 그 시간 동안에 도서관 또는 자습실로 가야 됨을 이해합니다.

_____ _____
학부모 또는 후견인의 서명 날짜

# 양식 6 –학생 이름, 사진, 웹페이지 상의 비디오 영상 및 다양한 출판물의 공공 사용에 대한 허가서
# 2015-2016

*양식 6 는 교육구 등록 시 작성되어야 하며 학부모 및/또는 후견인의 요청 시 언제라도 갱신될 수 있습니다. 본 허가서는 귀 자녀가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에 출석하는 동안 효력이 유지될 것이며, 귀 자녀 학교에 연락하여 언제라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 사무실에 제출하여 하십시요.*

_____ _____ _____ _____

학생 이름(***정자로 기재***) 학번 학교 학년

이 양식은 뉴스 매체, 교육구/학교 그룹들 또는 기타 교육구가 승인한 그룹에 의해 촬영된 회보, 학교/교육구 웹페이지 및 다양한 출판물(예, 학교 신문)에 학생의 이름, 사진 및/또는 비디오 영상 사용을 허가하거나 배제하는 둘 중 하나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간혹 교육 프로그램, 행사 또는 활동들에 대해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홍보를 위해 뉴스 매체에 의해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됩니다. 교육구는 주 법에 준하여 뉴스 매체 대표들이 뉴스 보도를 위해 학교에 와서 학생들을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뉴스 매체에 협력합니다. 학생들은 또한 교육구에 의해 성취도 인정, 표창, 교육구 프로그램, 행사 및 교육위원회 발표의 취지로 교육구에 의해 사진 촬영 및/또는 비디오 테이프에 촬영될 수도 있습니다.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학생과 학생 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아래의 2 가지 항목 중 1 가지를 선택하십시요**.

_____ 예, 본인은 상기 언급된 출판물에 본인 학생의 전체 이름, 사진 또는 비디오 영상이 사용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_____ 아니오, 본인은 본인 학생의 이름이 사용되거나 사진 또는 비디오로 촬영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_____ _____

학부모 또는 후견인 서명 날짜

**주의: 본 양식을 학교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모든 출판물 및 매체에 귀 자녀의 이름, 사진 및 비디오 영상 사용을 학교/교육구에 허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양식 7 – 군대, 고용주, 대학에 대한 11/12 학년생 정보제공 금지요청
# 2015-2016

"무 낙오생" 연방 교육개혁법은 교육구가 군 모병관, 가망성 있는 고용주 및 대학 신입생 모집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때 모든 고등학교 ***11 및 12 학년생***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자녀가 ***고등학교 11 및/또는 12 학년생***이며 글렌데일 통합교육구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를*** 원하실 경우, 아래의 모든 정보를 기재하고 서명하신 후 *자녀 학교 교장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18 세 이상인 경우엔 부모 또는 후견인이 아닌 학생 자신이 본 양식에 서명해야 합니다. 10 학년 또는 그 이하의 학년에 속한 학생의 정보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아래 양식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청된 모든 정보는 **2015 년 10 월 9 일, 금요일에** 군 모병관에게 제공되므로 아래 양식을 **2015 년 10 월 2 일, 금요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문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학생지원 서비스부, 818-241-3111, 내선 285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고등학교 11 및 12 학년생 정보 보류 요청**

**모든** 필요 정보를 정자로 명료히 기재하십시요.

| 학생 이름(*정자로 기재*) | 학번 | 학교 | 학년 |
|---|---|---|---|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본인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 본인 아이의 이름,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아래 장소에 제공하지 마시요.
(*한 가지 또는 모두에 체크*)

☐ **미국 군대** ☐ **고용주** ☐ **대학**

**학부모 서명**: _____

*__학생 서명__: _____

***(18 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

#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 및 책임
## 2015-2016

주 및 연방법은 교육구들이 매년 학생, 학부모, 후견인 및 성인 학생들에게 그들의 특정 권리와 책임에 대해 통고할 것을 요구한다. 가주 교육법 제48982조는 학부모들이 이 조항들에 대해 통고 받았음을 서면으로 알려 줄 것을 요구하며 학부모의 서명은 그가 자녀의 어떤 특정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법에 따라 통고 받았 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모든 학부모들은 양식 1 및 2, 그리고 기타 모든 양식들(본 안내서 시작 부분에 있음)을 서명한 후, 자녀를 통해 자녀의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문의 사항이 있으면 자녀의 학교에 연락하도록 한다.

### 비차별 대우 방침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의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은 본 안내서를 통해 글렌데일 통합교육구가 연방법에 따라 1964 공민권법 타이틀 6, 1972 교육 수정법 타이틀 9 및 1973 재활법 504조를 준수한다는 것을 통고받는다. 타이틀 6 및 9는 교육구에 의해 실시, 후원되는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있어서 연령, 성별, 성적 경향, 민족, 인종, 선조, 국교, 피부색, 심신장애와 관련하여 학생을 차별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며 504조는 장애로 인한 차별대우를 금지한다.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 직업, 스포츠 및 카운슬링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교육구의 방침이며 영어 실력은 이러한 프로그램의 등록이나 참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아래는 교육구 행정관 및 그들이 책임 맡고 있는 프로그램들이다.

| | |
|---|---|
| 부교육감(교육 서비스) | 초등학교 및 중학교<br>일반 교과과정<br>조기교육 및 학습연장 프로그램<br>체육<br>초등 마그넷 학교<br>이중언어 몰입/플래그 프로그램 |
| 부디렉터, 교육 서비스 | 카운슬링 및 지도<br>학생지원 서비스 |
| 부교육감(특수 교육) | 504조, 학생, 교육 프로그램 |
| 부교육감 (인사) | 504조, 고용, 직원<br>타이틀 IX |
| 선임 디렉터, 중등 서비스 | 고등학교/운동 |
| 부디렉터, 카테고리컬 프로그램 | 카테고리컬 프로그램<br>일관적 불만제기 절차 |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기회를 제공한다. 교육구 프로그램 및 활동들은 ***장이, 성별, 성적 정체성, 성별의 표현, 국적, 인종/민족, 종교, 성적 경향 또는 이러한 실제 또는 인지된 특징들의 한 두가지를 지닌 개인이나 그룹과의 유대***에 근거하여 차별하지 않는다. 불법적 차별에 대한 불만은 일관적 불만제기절차를 통해 조사되며 그러한 불만은 차별 주장이 처음 알려진 후 6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불만제기 양식 또는 추가 정보를 위해선 카테고리컬 프로그램 사무실, 신티아 맥카티-포리 박사에게 연락하고 추가 정보 또는 도움을 위해선 (818) 241-3111, 내선 457로 연락한다.

### 보건, 가족생활 및 성교육

**가주 교육법 51550에** 의해 교육구는 매년 7-12학년의 학부모에게 성병, 성 전염병, 에이즈 또는 인체 생식구조가 설명, 도해설명 또는 토론되는 모든 수업에 대하여 통보하며 학부모로부터 서면 요구가 있을 경우, 그러한 수업에서 학생을 면제시킨다. 이 주제와 연관된 학습 단원이 들어 있을 수 있는 과목들은 다음과 같다.

**필수과목**

생명과학 - 7학년
보건 - 9학년

**선택과목**

생리학 - 10, 11 또는 12학년
생물 과학 - 9, 10, 11 또는 12학년
인체 생물학 - 9, 10, 11 또는 12학년
생물 - 9, 10, 11 또는 12학년
아동 발달 - 11 또는 12학년
동료 지원 및 리더쉽 - 10, 11 또는 12학년

교재 및 교과내용과 관련된 특정 문의사항은 과목 담당교사와 의논한다. 학부모는 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재들을 각 학교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정보는 교감에게 문의하도록 한다.

**가주 교육법 51555**는 유치원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들이 성 전염병. 에이즈. 인간의 성 또는 가족 생활에 대한 수업을 받기 전에 교육구는 각 학생의 학부모나 후견인에게 그러한 교육 실시에 대해 서면 통고를 할 것을 요구하며 51201. 5(d)는 교육구가 7-12학년 학생의 학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에이즈 방지 교육의 목적을 서면 통고할 것을 요구 한다. 학부모/후견인은 학생이 에이즈 방지 교육을 받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센터의 학생지원 서비스부에서 에이즈 방지 교육과 관련된 가주 교육법 51201.5 및 51553의 사본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가주 교육법 51554**는 학부모가 적절히 통고되지 않으면 학생은 교육구에 의해 고용된 교사에 의한 집회 형식의 또는 외부 기관이나 초청 강사에 의한 어떤 형식의 강의든 성 전염병. 에이즈. 인간의 성 또는 가족 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

**가주 교육법 51240**는 "건강. 가족생활교육 및 성교육 중에 어느 부문이라도 학생의 부모나 후견인의 종교적 가르침 또는 신조와 상충될 때. 학생은 부모나 후견인의 서면 요구에 따라서 그 상충되는 부문의 교육에서 면제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 조항의 종교적 가르침 또는 신조는 개인의 도덕적 신념을 내포하고 있다. ***자녀가 이러한 수업에서 면제되기를 원하는 경우, 학부모는 양식5를 작성하여 교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 가주 보건 서비스

**고육법 49480**: 학부모나 후견인은 학생이 현재 만성 질환의 이유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약명과 현재의 복용량 및 담당 의사의 이름을 학교 간호사 또는 다른 유자격 직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자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학교 간호사는 담당 의사와 연락하기 위해 부모의 승락을 받을 것이며 약의 효력. 부작용 증세. 복용 소홀. 또는 과다 복용에 대한 정보를 적절한 학교 인사에게 전달한다. ***자녀가 특별한 약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양식4를 작성하여 출석 학교 보건실에 제출하도록 한다.***

**유의 사항**:

1. 자녀가 학교에서 약을 복용할 필요가 없도록 의사와 상의하여 약 복용 시간을 짠다.
2. 자녀가 지속적 의료 문제로 인해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경우. 비록 집에서만 복용하더라도 매 학사년 초. 학교 간호사 또는 기타 지정된 교직원에게 메모지를 전해야 하며 거기에는 약명. 현 복용량 및 처방 의사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법 49480).
3. 자녀가 학교에서 약을 복용해야 할 경우. 학부모. 자녀의 의사 또는 가주 면허를 소지한 기타 의료인은 학교에 메모지를 제출하도록 한다. 매 학사년 초. 그리고 약품. 주의사항 또는 의사 변경시 최신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교육법 49423).
4. 학부모 또는 후견인으로서 당신은 자녀가 학교에서 복용하는 모든 약품을 전달해야 한다. 자녀가 자신이 약을 지참하고 복용하는 것이 승인되지 않은 이상 당신 또는 다른 성인은 학교에 약품을 가져와야 한다.
5. 리탈린 같은 모든 통제 약품들은 학교 전달 시. 수량 파악 후 약품일지에 기재되어야 한다. 학교에 약품을 전달하는 학부모 또는 다른 성인은 일지에 서명하여 확인한다.

**가주 보건 및 안전법 124100 및 124105**: 아동 보건 및 장애 방지 프로그램(CHDP)은 학생들이 1학년에 입학하기 전에 완전한 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신체검사를 유치원 시기에 받았으되 1학년에 입학하기 18개월 이내에 받았다면 요구사항에 부합된다. 학생은 이 요구 조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면제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메디칼 수혜 자격 학생 또는 비수혜자라도 저소득 가정의 학생에게 검사비는 무료이며 신체검사는 지역 카운티 보건소나 CHDP가 인가한 의사들로 부터 받을 수 있다.

**가주 교육법 49403**: 교육구는 전염병 면역접종에 대해 학부모가 서면으로 동의한 학생들에게 그러한 질병의 예방이나 통제를 위해 면역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유치원과 탁아 시설에 등록하는 모든 아동들은 B형간염. 소아마비.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유치원에 등록하는 아동들은 또한 2회의 홍역 백신을 받아야 하는데 적어도 그 가운데 하나는 MMR(홍역. 이하선염. 풍진)이고 하나는 수두 백신이라야 하며 7학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2번째 MMR접종을 받아야 한다. 10세 이후 어느 때든 7-12학년 진학을 위해선 Tdap(파상풍-디프테리아. 백일해))에 대한 1회분의 추가 접종이 요구된다.

**2014년 1월 1일부터, 면역접종 요건으로부터 학생을 면제시키는 서명된 면제서는 1) 면역접종의 이점 및 전염병의 위험에 관해 학부모/후견인에게 정보를 제공한 의료인 및 2) 그 의료인으로부터 정보를 받았음을 나타내는 학부모/ 후견인이 서명한 가주 보건부 양식이 포함된다.**

**가주 교육법 49423:** 학교에서 처방약을 복용해야 하는 학생들은 교육구가 의사의 지시를 이행하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과 함께 복용량, 방법, 시간을 명기한 의사로부터의 메모를 제출해야 한다.

**가주 교육법 49451:** 학부모는 매년 교장에게 자녀의 신체검사 면제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가 인지된 전염 또는 감염성의 질병을 앓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자녀는 등교가 금지된다.

**가주 교육법 49452.7:** 가주 교육부는 가주 공공보건부, 미국 당뇨협회, 가주 학교 간호사 단체 및 오렌지 카운티 아동 병원과 협력하여 제2형 당뇨병에 관한 아래의 정보를 마련하였다. 2010년 7월 1일부터 교육구는 7학년으로 진학하는 학생의 학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제2형 당뇨병에 관한 정보지를 제공한다.

**설명:**

제2형 당뇨병은 성인에게 가장 흔한 유형의 당뇨병이다.

1. 몇년 전까지 제2형 당뇨병은 아동에게 드물었으나 이젠 통상적이 되었으며 특히 비만 아동에게 빈발한다.
2. 미국 질병 통제/예방 센터에 의하면 2000년 이후 태어난 미국 아동 3명 중 1명은 그의 일생에 제2형 당뇨병을 앓게 된다고 한다.

제2형 당뇨병은 신체가 에너지를 위해 포도당을 사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1. 신체는 음식의 탄수화물을 신체 세포의 기본 연료인 포도당으로 전환한다.
2. 췌장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로 나르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생산한다.
3. 제2 유형 당뇨병에서 신체 세포는 인슐린에 저항하여 혈액의 포도당 수치가 상승한다.
4. 시간이 경과하면 혈액의 포도당 수치가 위험하게 높아져 혈당 과다증이 된다.
5. 혈당 과다증은 심장병, 실명 및 신장병같은 건강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제2형 당뇨병과 관련된 위험 요소:** 제2형 당뇨병과 관련된 위험 요소및 경고 징후를 보이거나 앓고 있는 학생은 검진 받을 것이 권고된다. 연구자들은 어떤 사람은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어떤 사람은 앓지 않는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나 아래 위험 요소들은 아동의 제2형 당뇨병 증대와 연관되어 있다.

1. **비만.** 아동의 제2형 당뇨병의 단일 최대 위험 요소는 과체중이다. 미국 아동 5명 중 1명은 과체중이며, 이들이 당뇨병을 앓을 가능은 2배 이상이다.

2. **가족의 당뇨 병력**: 부모 중1명이 당뇨 또는 심한 가족 당뇨 병력이 있은 경우 자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3. **불활동:** 불활동은 신체의 인슐린 반응력을 더욱 감소시킨다.

4. 특정 인종/민족: 미 본토인, 흑인, 라틴계 또는 아시아/태평양 제도인은 타 민족 그룹에 비해 제2형 당뇨병에 더 취약하다.

5. **사춘기:** 사춘기 아동은 급성장 및 신체발달 단계 동안 아마도 인슐린 저항을 가져올 수있는 호르몬 수치의 정상적 상승으로 인해 사춘기 아동은 어린 아동보다 제2 유형 당뇨병을 앓을 가능성이 크다.

**제2형 당뇨병과 관련된 경고 징후 및 증세:** 아동의 제2형 당뇨병과 관련된 경고 징후 및 증세는 서서히 나타나며 초기에는 증세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인슐린 저항 또는 제2형 당뇨병을 가진 모두가 이러한 경고 징후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증세를 보인다고 해서 제2형 당뇨병을 앓는 다고도 할 수 없다.

1. 식사 후에도 배고픔 증가
2. 원인불명의 체중 감소
3. 갈증 증대, 건조한 입, 빈번한 방뇨
4. 심한 피곤감
5. 흐린 시야
6. 잘 낫지 않는 흠 또는 상처

7. 특히 목 뒤 또는 겨드랑이 피부 일부가 검고 매끈하거나 볼록하다
8. 여학생의 경우, 월경불순, 무월경 및/또는 과다한 얼굴 및 신체 체모
9. 고혈압 또는 비정상적 콜레스트롤 수치

**제2형 당뇨병의 예방법 및 치료:** 건강한 생활양식은 제2형 당뇨병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족에 당뇨 병력이 있다고 해도 적정량의 건강식 및 정기적 운동은 아동의 정상 체중 및 혈중 포도당 수치의 달성 및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1. **건강식:** 음식을 현명하게 선택하여 저 지방 및 저 칼로리 음식을 먹는다.
2. **신체활동의 증대:** 매일 적어도 60분으로 신체활동을 늘린다.
3. **약물 치료:** 음식 및 운동으로 병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제2형 당뇨병 치료의 첫 단계는 의사방문이다. 의사는 아동이 자신의 나이, 체중 및 신장에 비해 과체중인지 결정하며 또한 아동이 당뇨 또는 당뇨 전 단계(제2 유형 당뇨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태)인지 보기 위해 아동의 혈당 검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가용한 당뇨병 테스트 유형:**

1. **그리케이티드 헤모그로빈(A1C) 테스트.** 2, 3개월에 걸쳐 평균 혈당을 측정한다. 두 별도의 테스트에서 **A1C** 6.5% 또는 그 이상은 당뇨병을 의미한다.
2. **무작위 혈당(비 공복 상태) 테스트.** 아무 때나 혈액을 채취하여 데시리터당 200 밀리그램의 혈당 또는 그 이상은 당뇨이다. 이는 공복상태 혈당 테스트로 확인되어야 한다.
3. **공복상태 혈당 테스트.** 야간 공복 후 혈당을 측정하여 데시리터당 100 밀리그램 이하이면 정상, 100-125사이이면 전단계, 두 별도의 테스트에서 126 또는 그 이상이면 당뇨이다.
4. **구강 포도당 내성 테스트.** 야간 공복 후, 설탕물을 마시고 다음 몇 시간 동안 주기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혈당 측정 테스트로서 2시간 경과 후, 데시리터당 200 밀리미터 이상은 당뇨를 의미한다.

아동 제2형 당뇨병은 예방/치료가 가능한 병이며 본 정보를 통해 제공된 안내는 이 병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기 위한 것이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자녀 학교 간호사, 학교 행정관 또는 의료인에게 문의한다.

**참조:**

- 미국 당뇨협회 임상 회보
- 당뇨 아동 돕기: 학교인사를 위한 안내
- 아동보건
- 메이요 클리닉
- 국가 의료 도서관(NLM) 및 국가 보건연구소(NIH) 메들라인
- 미국 질병 통제/예방 센터

**질의:** 학생 서비스 - www.cde.ca-- (916) 319-0284

**가주 교육법 49452.8:** 자녀의 첫 공립학교 입학이 과도기 유치원/유치원 또는 1학년인 자녀는 5월31일까지 유면허 치과의사 또는 치과 보건 전문의로부터 구강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법은 명시하고 있다. 학교 입학전 12개월 이내에 받은 검진 역시 이 요건을 충족시킨다. 자녀가 검진 받을 형편이 못될 경우 필요 양식의 제3항을 기재하여 면제 받을 수 있다.

**가주 교육법 49475 - 뇌진탕 및 뇌상해:**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구는 매년 학생 선수의 첫 훈련 시작 또는 시합에 참여하기 전 학생 및 학생의 학부모/후견인으로부터 뇌진탕 및 머리 상해 정보지에 서명을 받고 제출 받아야 한다. 선수는 요구되는 정보지를 위해 스포츠 디렉터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는 정규 수업일 동안 또는 체육수업의 일부로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뇌진탕 정보지
# 2015-2016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뇌진탕 정보지**
*(2015-2016 학사년도에만 적용)*

**사실:**
뇌진탕이란 머리에 가해진 충격이나 타격 또는 신체의 다른 부분에 가해진 타격이 머리로 전파되어 생긴 일종의 두뇌 상해이다. 뇌진탕은 약함으로부터 심각함의 범위에 걸칠 수 있으며 두뇌의 정상적 작용을 방해 할 수 있다. 비록 대부분의 뇌진탕은 약한 것이지만 **모든 뇌진탕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것으로서 적절히 인식 및 치료되지 않으면 뇌손상 및 사망을 포함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뇌진탕은 알아보기 어려우며 대부분의 스포츠 뇌진탕은 의식을 잃지 않은 상태로 발생한다. 뇌진탕의 징후 및 증세는 다양하여 상해 후 바로 나타나거나 몇 시간, 며칠 후에 완전히 나타날 수도 있다. 자녀가 어떤 뇌진탕 증세를 호소하거나 당신 자신이 징후/증세를 보게 되면 즉시 의료인에게 보여야 한다.

**증세:**

- 두통
- "머리 압박감"
- 메스꺼움 또는 구토
- 목통
- 균형문제 또는 현기증
- 흐린 또는 이중 시야
- 빛 또는 소리에 민감
- 나른함
- 몽롱함
- 졸리움
- 수면 패턴 변화
- 불면증
- "컨디션이 안 좋음"
- 피로감 또는 무기력
- 우울
- 신경불안 또는 불안
- 짜증
- 감정적
- 혼동
- 집중 또는 기억문제(게임 룰 망각)
- 동일 질문/말 반복

**뇌진탕 상태에서 운동하거나 곧바로 경기에 다시 임하는 위험성** 뇌진탕 징후 또는 증세를 보이는 선수는 즉시 경기를 멈추어야 한다. 지속하는 경우, 젊은 선수는 더 큰 상해에 특히 취약하다. 특히 운동선수가 첫 뇌진탕으로부터 회복되기 전 두 번째 뇌진탕을 입을 경우 뇌진탕 발생 후 한 동안 뇌진탕으로부터 심한 상해를 입을 위험이 증가한다. 그럴 경우, 참담한 그리고 치명적일 수도 있는 결과와 함께 회복이 더디어지거나 뇌가 심하게 붓기도 할 수 있다(2차 충격 증후군). 사춘기 또는 십대 운동선수들은 상해 증세를 종종 줄여서 보고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뇌진탕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행정관, 코치, 학부모 및 학생에 대한 교육은 학생-운동선수의 안전에 열쇠이다.

**자녀가 뇌진탕을 입었다고 생각할 경우**
CIF는 연습 또는 게임 도중 뇌진탕이나 머리 상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학생선수는 사건 발생시, 그리고 나머지 날 동안 경기로부터 끌어내어 몇 시간 계속 면밀히 관찰할 것을 요구한다. 경기로부터 끌어내어진 학생 선수는 뇌진탕 평가 및 치료 훈련을 받은 유면허 건강 관리인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다시 경기로 돌아가도 좋다는 승인서를 받을 때까지 경기에 다시 임할 수 없다.

학부모는 또한 자녀가 뇌진탕을 입었다고 생각할 경우 코치에게 알려야 한다.전 시즌을 놓치는 것보다는 한 게임을 놓치는 것이 더 나음을 상기하도록 한다. 의심이 가는 경우엔, 벤치에 앉아 있도록 한다.

뇌진탕에 관한 최신 정보 웹사이트: http://www.cdc.gov/ConcussionInYouthSports

**가주 학생 보험 플랜**
**교육법 49472:** 교육구는 정규 수업일, 학교 후원 행사 또는 장소 이동 중 발생하는 상해에 대한 사고보험이 가용하도록 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자료가 신 학사년도의 첫 주 동안에 유치원-6학년의 각 학생 편으로 가정에 전달되며 그 이후 모든 입학하는 학생들의 학부모에게도 전해진다. 중·고등학교의 경우엔 학교에서 신청서를 구할 수 있다. 보험 가입비는 학부모/후견인이 부담한다.

## 거주지 학교 선택

1. 6-18세 사이의 미성년자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면제되지 않은 이상 학부모/법적 후견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교육구에 속한 학교에 등록해야 한다.

2. 학생은 다음의 경우 교육구 내의 출석 학교에 대한 주거 요건을 양자택일적으로 존수할 수 있다: 복지 및 아동기관 법 하의 배치에 따라 교육구 관할구역 내의 양육가정 또는 유면허 아동시설에 배치된 학생. **자신이 본래 다니던 학교에 남아 있는 양육가정 입양 학생**. 교육구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독립된 학생. 교육구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성인 보호자 집에 사는 학생 또는 교육구 관할구역 내의 주정부 병원에 거주하는 학생.

3. 과거 수년 동안 학생들의 등교 지역은 교육시설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이웃 학교 개념에 근거하여 설정되어 왔으나 교육구는 타지역 전학 요청을 앞으로도 계속 고려할 것이며 교육구는 다음과 같은 선택들을 제공한다:

   가. **교육구내 전학 허가**(Intradistrict Permits)-이 요청은 다음과 같은 개인적 필요 사유에 대해 고려된다: 적응 문제. 이사 계획. 교육구 취업. 앞서의 재학. 개인적 탁아 선정. 형제자매 및 특별 교과과정. 교육구내 전학 허가 신청서는 교육구 학생지원 서비스부에서 받을 수 있다.

   **교육구내 개방 등록 - 교육법 35160.5(b)** - 교육구 주민은 빈자리가 있을 경우 자녀를 교육구 내 타 학교 전학 신청을 할 수 있다.교육구 내 각 학교에 대한 정보는 교육구 웹사이트에 제공되고 있다.

   나. **타 교육구 전학 허가**(Interdistrict Permits)-학부모/법적 후견인은 아동을 타 교육구 학교로 전학시킬 수 있으며 이 허가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에 대해 고려될 수 있다: 예정된 이사. 기회, 앞서의 재학 또는 개인적 탁아 선정(유치원-8학년). 형제자매. 부모 취업(유치원-8학년). 개방 등록(교육법 제46600조). 타 교육구 등교 허가는 거주지 교육구를 통해 신청되어야 하며 거주지 교육구와 받아들이는 교육구의 양쪽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한다. 교육구들은 최대 5년 동안 1명 또는 그 이상의 학생에 대한 타 교육구 등교허가에 동의할 수 있으며 그것은 전학의 승인 또는 거부에 대한 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재신청 기준을 포함하고 승인 취소 조건을 명시할 수있다. 동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이상 학생은 타 교육구 등교를 재신청 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교육구는 학생이 다니던 학교에 계속 다니도록 승인해야 한다. 타 교육구 등록 거부에 대한 재심 청구는 학생지원서비스부에 서면으로 제출되야 하며 재검토 후에도 계속 거부되는 경우, 재심 청구는 교육감이나 대리에게 하며 그 후엔 카운티 교육 위원회에 한다.

   다. **던스모어, 제퍼슨, 몬터 비스타, 뮤어, 알 디 화이트 및 버듀고 우들랜즈의 비 매그닛 이중언어 집중교육 플레그 프로그램**(Non-Magnet Dual Language FLAG Program) - 초등학교 플래그 프로그램 학교 중 한 곳에 다니길 원하는 글렌데일 교육구 주민은 플래그 프로그램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입학될 경우, 필요한 모든 등록 서류를 해당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글렌데일 교육구 주민은 자신의 거주지 학교가 아닌 학교의 플래그 프로그램 출석에 대해 교육구 내 전학 허가서 취득이 요구되지 않으나 타 교육구 거주 신청자는 플래그 프로그램에 입학될 경우, 등록 절차를 마치 위해서 자신의 거주지 교육구로부터 방출서를 받을 것이 요구된다. 이 방출서는 *등록 확인서* 및 타 교육구 전학 허가 신청서와 함께 학생지원 서비스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플래그 프로그램 지속은 학생의 학교 출석 및 품행 기대치 달성에 달려있으며 이 기대치 충족 실패는 학생 자신의 거주지 학교 또는 거주지 교육구로 돌아가야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라. **에디슨, 후랭클린 및 케럴의 초등 매그닛 프로그램**(매그닛 학교들의 **FLAG** 프로그램 포함) - 초등 매그닛 학교 중 한 곳에 다니길 원하는 글렌데일 교육구 주민은 매그닛 학교 입학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입학될 경우, 필요한 모든 등록 관련 서류를 해당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글렌데일 교육구 주민은 자신의 거주지 학교가 아닌 학교의 플래그 프로그램 출석에 대해 교육구 내 전학 허가 요청서 취득이 요구되지 않으나 타 교육구 거주 신청자는 플래그 프로그램에 입할될 경우, 등록 절차를 마치기 위해서 자신의 거주지 교육구로부터 방출서를 받을 것이 요구된다. 이 방출서는 *등록 확인서* 및 타 교육구 전학 허가 신청서와 함께 학생지원 서비스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플래그 프로그램의 지속은 학생의 학업 수행, 학교 출석 및 품행 기대치 달성에 달려있으며 이 기대치 충족 실패는 학생 자신의 거주지 학교 또는 거주지 교육구로 돌아가야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마. **과도기 유치원(TK)** –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의 모든 학교가 과도기 유치원을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과도기 유치원 유자격 학생(9월 2일 - 12월 2일 사이 또는 그 당일 5살이 되는 아동)은 그들의 주거지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과도기 유치원에 배정된다. 자신의 거주지 학교가 아닌 학교의 과도기 유치원에 배치된 학생은 그 다음 해 유치원을 위해 자신의 거주지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바. **개방 등록법 - 교육법 48350 이하**

학생이 공교육 교육감에 의해 확인된 개방등록 실시 학교에 다닐 경우 학생은 자신이 전학하려는 학교의 학업수행지수가 높은 한, 교육구내 또는 밖의 타 학교로 전학할 수 있다. 고교 스포츠팀에 속한 학생의 학부모는 이 선택 하에서 전학을 시도하기 전에 CIF 스포츠 자격 규칙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타 학교에의 교통은 학부모 책임이다. 교육구는 학생들이 무작위의 공평한 절차를 통해 선정되는 한, 신청에 대한 구체적 승인 또는 거부 기준을 작성하도록 허용된다. 교육구가 마감일을 정하지 않는 한, 전학 요청은 전 학사년도 1월 1일까지 접수되어야 하며 신청을 위해 학부모는 자녀를 전학시키려는 교육구에 직접 연락해야 한다. 개방등록 학교 명단은 가주 교육부 웹사이트 http://www.cde.ca.gov/sp/eo/op/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법안 AB1156은 학생이 그가 속한 교육구 또는 전학하려는 타 교육구 인사에 의해 자신이 속한 교육구 학생에 의한 약자 괴롭히기 행위의 희생자 라고 판정된 경우, 기존 타 교육구 전학 동의서 하에서 타 교육구 전학에 우선권이 주어지거나 동의서가 없을 경우엔 학부모/법적 후견인의 요청에 따라 타 교육구 전학 동의서 작성을 위해 추가적 고려가 주어져야 한다.

본 통고서에 설명된 전학 선택에 관한 추가 정보를 원하는 경우, (818) 241-3111, 내선 283, 학생지원 서비스부에 연락하도록 한다.

## 학부모 참여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유대는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시키고 학생 성공 기회를 증대시키며 학생의 가족은 학생의 학업에 필수적인 파트너이다. 학교와 교육구에서 학생 가족의 적극적 참여는 학생의 성취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 학부모/후견인은 자녀의 교육에 보람된 방식으로 참여하고 학교와 교육구 차원에서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할 기회들을 가지며 학부모/후견인은 통신문, 학교 및 교육구 웹사이트(www.gusd.net)를 통해 참여 활동 및 기회들에 대해 통고된다.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 학교 운영위원회(SSC)및/또는 영어 자문위원회(ELAC)에 참여할 것이 권장된다. 학교 운영 위원회는 학교의 특정 프로그램 및 계획들의 효율성에 대한 조언을 위해 소집되는 자문위원회이다. ELAC 또한 영어 학습자의 학업 문제 및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 자문위원회이다. 학부모는 또한 교육구 영어학습자 자문위원회 (DELAC)에도 참여할 수 있다.

## 영어 학습생(ELL) 정보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의 목적은 모든 학생들에게 표준에 근거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영어 학습생에 대한 이중 목표는 그들이 영어 능숙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발달시키고 모국어가 영어인 동년배 또는 동일 학년 학생들과 동일한 학업 진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영어 학습생들은 그들의 영어 능숙성을 발달시키기 위한 적절한 지도를 통해 학년 수준의 학과목 내용 수업을 받는다. 모든 영어 학습생들은 높은 능숙도 및 읽기/쓰기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영어발달(ELD) 및 교과과목 수업을 받는다.

**가주 교육법 52164.1**에 따라 영어 외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모든 등록생들은 적절한 영어발달 프로그램에 배치를 위해 영어 실력 테스트가 주어지며 그의 모국어 또한 평가될 수 있다.

주정부가 승인한 영어 평가는 가주 영어발달 테스트(CELDT)이며 등록 시에, 그리고 그 후 매년 모든 영어 학습생들에게 실시된다. 학부모/후견인은 평가 결과, 학생의 영어 능숙도 및 프로그램에 있어서 배치 수준에 대해 통고받는다.글렌데일 교육구는 영어 학습생들에게 다음의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다.

* 구조화된 영어집중 수업 - 이것은 영어가 어느 정도 능숙하지 못한 학생을 위한 것이다. 대부분의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지만 교과과정및 지도는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에 맞추어져 있다.

* 영어주류 수업 - 이것은 영어가 어느 정도 능숙한 영어 학습생의 영어 습득을 위한 것으로서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된다

* 대안 프로그램 (이중언어 집중수업) - 승인된 "학부모 면제 요청서"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대안 영어 습득 프로그램. 학생들은 영어개발(ELD)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자신의 모국어로 핵심 과목들을 배운다.

학부모는 자녀 학교에 교육구 프로그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문화상호교육부를 통해 가능한 경우, 영어 외의 언어를 말하는 학부모/후견인에게 통•번역을 제공한다

**학교 출석**

자녀가 그의 잠재력을 완전히 달성하기 위해선 정기적 학교출석이 중요하다. 새 학사년이 시작됨에 따라 우리는 학부모가 **매일** 자녀의 학교 출석에 가외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권한다.

**가주 규정법 타이틀 5, 421 및 교육법 48205:** 고직원이나 의사의 확인 하에 학생은 그의 질병, 격리 수용, 의료 예약 (치과, 검안과 포함), 직계 가족원 장례식 참석 또는 배심원 출두로 인해 결석할 수 있다.

학생은 또한 부모나 후견인이 학생의 결석을 서면 요청하고 교장이나 대리가 승인하는 경우 법정 출두, 자신의 종교 휴일이나 의식 준수, 종교 피정 참여 또는 취업 면담을 포함한, 그러나 이것들에만 국한되지 않은 정당한 사적 이유로 결석할 수 있다. 피정 참여는 학기당 4시간을 초과해선 안 된다.

**가주 교육법 48980(j)** : 상기 타당 사유들로 결석한 학생은 평점 삭감이나 학점 상실을 받지 않으며 적절히 제공되는 결석 동안 놓친 모든 과제 및 테스트를 받을 기회가 주어지고 적절한 기간 안에 만족스럽게 끝마치면 학점을 다 받을 수 있다. 학생이 결석한 그 과목의 교사가 학생이 벌충할 과제와 그것을 완성할 시간을 정하며 그 테스트와 과제는 학생이 결석 동안 놓친 테스트 및 과제와 어느 정도 동일하나 반드시 꼭같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가주 교육법 48260**: 풀타임 의무교육이나 보습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으로서 타당한 사유 없이 한 학사년에 3일 간 결석 하거나 또는 한 학사년에 3번에 걸쳐 타당한 사유 없이 한 수업일 동안 30분 이상 지각, 수업 불참 또는 이것들의 어떤 결합 형태로 수업에 불참하는 학생은 무단 결석으로 간주되며 출석 감독이나 교육감에게 보고된다.

**타당한 사유의 결석 - 교육법 48205**

가) 교육법 48200조에도 불구하고 학생은 다음의 경우, 결석이 허용된다:

1. 발병
2. 시 또는 카운티 보건관리 지시에 따른 격리
3. 의료, 치과, 안과 또는 척추지압 치료
4. 직계 가족 장례식 참석 - 가주 장례식은 1일, 타주 장례식은 3일 이내
5. 배심원 의무 수행
6. 학생이 양육 부모인 아동의 학교시간 동안 발병 또는 의료 예약
7. 학부모/법적 후견인이 학생의 결석을 서면 요청하고 이를 교장 또는 대리인이 세워진 일관적 표준에 따라 승인할 때 법정출두, 장례식 참석, 자기 종교의 경축일 또는 예식 준수, 피정 참여, 취업박람회 참여 또는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입법 또는 사법 절차에 관한 교육적 회의 참석 등을 포함한 정당한 개인적 사유
8. 12302항에 따라 선거 실시를 위한 선거구 멤버로서 봉사
9. 학생의 직계 가족구성원의 한 명으로서 교육법 49701에 규정된대로 전투 지역 배치 또는 전투 지원직으로부터 휴가를 받았거나 귀가한 현역 군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한 목적. 본 문절에 따른 결석은 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기간 동안 승인된다.

나) 본 조항에 따른 결석생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결석 동안 놓친 모든 과제 및 테스트를 완성하도록 허용되며 적절한 시간 내에 만족스럽게 완성될 경우, 완전 크레딧을 받는다. 학생이 결석한 학과목 교사는 학생이 결석 동안에 놓친 테스트 및 과제와 적절하게 동등한 그러나 동일할 필요는 없는 테스트 및 과제를 결정한다.

다) 피정 참석은 학기당 4시간을 초과해선 안 된다.

라) 본 조항에 따른 결석은 일일 출석률 계산 시의 결석으로 간주되며 주 정부가 배당하는 지불액과 무관하다.

마) 본 조항에 사용된 "직계가족" 이란 "피고용인"은 "학생"을 지칭한다는 것 외에 45194조에 규정된 의미와 동일하다.

## 학생 품행

**효율적 학업은 안전하고 보안된, 그리고 평화로운 환경없이는 불가능하다. 학교는 폭력, 무기, 편견 또는 학대를 용납하지 않는다. 학생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자녀 학교의 규칙들을 익히도록 한다. 아래는 학생 품행을 규제하는 가주 법 및 글렌데일 통합 고육구 방침의 일부이다.**

**학생 책임 부과 의무(가주 고육법 44807항)** 모든 교사/행정관은 학생들이 교정에 있는 동안, 등·하굣길에, 점심시간 동안, 교정 안팎에서, 학교 후원 행사 참여 왕복 동안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도록 한다. 학부모는 모든 글렌데일 학교들에서 품행규칙을 받아볼 수 있다 (법적참조: 교육법 48900, 48900.2, 48900.3, 48900.4, 48900.7항)

행정관은 교육구의 학생, 교사, 고직원 및/또는 행정관들의 훈육, 교육환경, 안전 또는 전반적 안녕에 대한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거나 또는 심각한 위협을 주는 교정 밖 또는 학교활동에서 발생하는 학생 비행에 대한 정보가 입수되면 적절한 조치(정학 또는 퇴학)를 취할 수 있다.

**학생 책임 (가주 고육법 48908 및 5 CCR 300)**: 모든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정시에 등교하고, 학교 규정을 준수하고, 교사와 기타 권위인의 모든 지시에 대해 신속히 복종하고, 학업에 매진하고, 교사와 기타 권위인을 존중하고, 급우에 대해 친절과 예의를 보이며 신성모독어, 비속어 사용을 삼가도록 한다.

**학생 수색 (글렌데일 통합고육구 방침 5145.12)**: 학교 인사는 법이 허용할 때마다 또는 수색을 통해 학생이 법을 위반 하거나 교육구나 학교의 규칙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확보할만 한 타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학생 개인과 자동차를 포함하여 그의 소유물을 수색할 수 있다.

여기에는 셀폰 정보, 텍스트 메시지 및 이미지에 대한 수색이 포함된다. 온라인 약자 괴롭히기 및 온라인 성희롱은 용납되지 않는다. 학부모는 자녀의 셀 폰 상의 불법적일 수 있는 이미지 및 텍스트 메시지에 대해 알고 있을 필요가 있으며 그 위법 행위를 멈추게 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지품 반입 방지를 위해 락커 및 학급에 대한 무작위 수색이 실시될 수 있으며 수색견 및/또는 금속 탐지기가 사용될 수도 있다.

**무기(글렌데일 통합고육구 방침 5131.7)**: 가주 및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안전한 교육 환경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으며 모든 종류의 화기, 칼, 폭발물 및 페퍼 스프레이, 최루 가스 및 레이저 포인터같은 기타 위험물들의 소지는 불법이다.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 (가주 고육법 48901.5 및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방침 5131)**:
학생은 수업일 동안, 학교 후원 활동 참여 동안, 또는 고직원의 통제, 감독 하에 있는 동안 셀폰, 스마트폰, 랩탑 컴퓨터, 태블릿 기기 또는 기타 커뮤니케이션 장비같은 전자 기기의 고정 내 소지가 허용된다. 전자 기기는 교장 판단 에 따른 학교 관련 비상시(예: 교정 폐쇄, 지진 또는 그와 같은 사건의 발생) 또는 건강 상의 이유로 사용될 수 있다.

수업일 또는 기타 학교 활동 동안 이러한 기기의 부적절한 사용은 학교 활동의 방해로 간주되며 징계조치가 따르게 된다. 학교활동을 방해하는 전자기기는 행정관 또는 대리의 재량에 따라 압수될 수 있으며 학생의 부모나 후견인에게 통고되고 학교가 끝날 때 학부모/후견인 또는 학생에게 돌려준다. 교육구는 이러한 물품들의 도난, 분실 또는 파손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약자 괴롭히기 신고 절차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방침 5131)** 학생들은 자신이 약자 괴롭히기를 당하거나 또는 다른 학생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 학교 교직원에게 알릴 것이 권장된다. 또한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학생들이 비밀이 유지되며 익명으로 협박이나 사고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수립해야 한다. 약자 괴롭히기를 목격한 학교 교직원은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사고를 중지시키기 위해 개입해야 한다. (교육법 234.1) 학생들은 그들이 약자 괴롭히기로 간주되는 행위에 대한 불만제기를 교사 또는 행정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약자 괴롭히기에 대한 불만제기는 학교 차원의 불만 신고 절차에 준하여 조사되고 해결된다.

**정학 및 퇴학 (가주 고육법 48900)**: 한 학생은 교육감 또는 그가 등록되어 있는 학교의 교장이 아래 (a)부터 (r)까지의 항목에 정의 된 어떤 행위를 그가 범했다고 판정하지 않는 이상 학교로부터 정학되거나 퇴학 권고를 받을 수 없다:

(a) (1)타인에 신체상해를 가하거나 시도하거나 협박함. (2)정당방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에 고의적으로 완력이나 폭력을 사용함.

(b) 학생이 총기, 칼, 폭발물 또는 기타 위험물 가운데 어떤 것을 학교의 유자격 직원으로부터 허가서를 발부받고 그것을 교장이나 그의 대리가 승인하여 소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물건들을 소지, 판매 또는 공급함

(c) 보건 및 안전법 10부 2장(11053조 이하)에 열거된 통제물질,알코홀성 음료 또는 모든 종류의 마취 물질들의 비합법적 소지, 사용, 판매, 공급 또는 영향하에 있었음.

(d) 보건 및 안전법 10부 2장(11053조 이하)에 열거된 통제물질, 알코홀성 음료 또는 모든 종류의 마취 물질들을 비합법적으로 제공, 판매 알선 또는 협상을 하고나서 타인에게 다른 액체, 물질 또는 물건을 그것들이 통제된 물질, 알코홀성 음료 또는 마취 물질인양 판매, 전달 또는 공급함.

(e) 절도 또는 착취를 범하거나 시도함.

(f) 학교 또는 개인 소유물을 파손하거나 시도함.

(g) 학교 또는 개인 소유물을 절도하거나 시도함.

(h) 담배 또는 관련, 여송련, 미니 여송련, 클로브 관련, 무연담배, 스너프, 씹는 담배및 베텔을 포함한. 그러나 이것들에만 국한되지 않은 토배코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제품을 소지 또는 사용함. 그러나 이 항목은 학생의 의사가 처방한 물품의 소지나 사용을 금하지는 않음.

(i) 음란 행위를 하거나 습관적으로 신성모독어 또는 비속어를 사용함.

(j) 보건 및 안전법 11014.5조에 정의된 어떤 종류의 마약사용 도구를 불법적으로 소지, 제공, 판매 알선 또는 협상을 함.

(k) (1) 학교 활동 방해 또는 수퍼바이저, 교사, 행정관, 학교 경찰, 또는 직무수행 중의 기타 학교 인사의 정당한 권위에 고의적으로 도전함.

(2) 제 48910에 규정된 경우의 제외로, 유치원 또는 모든 1-3 학년에 등록된 학생은 이 조항에 열거된 어떤 행위에 대해 정학되지 않으며, 이 조항은 유치원 또는 1-12학년에 등록된 학생들에 대해 퇴학이 권고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본 문단은 2018년 7월 1일 이전에 시행, 삭제 또는 해당 날짜를 연장하도록 차후 법제화되지 않는 한 2018년 7월 1일에 무효화된다.

(l) 알면서도 학교나 개인의 도난품을 수취함.

(m) 모조 총기의 소지. 본 항목에서 모조 총기란 그 외관이 기존의 실제 화기와 매우 유사하여 보통 사람이 그것을 보고 실제 총기로 오해케 하는 모조품을 의미함.

(n) 형법 261, 266c, 286, 288a, 288 또는 289항에 규정된 성폭행을 범했거나 시도함 또는 형법 243.4항에 규정된 성적 구타를 범함.

(o) 학교의 훈육 징계절차에 있어서 피해를 고발하는 증인 또는 증인 학생을 그가 증언 못하도록, 또는 그 학생의 증언에 대한 보복의 의도로, 또는 그 모든 양쪽의 이유로 그를 괴롭히거나 협박하거나 위협함.

(p) 처방약 SOMA (이완/진통제)을 불법적으로 제공하거나 판매하거나 판매 알선 또는 협상함.

(q) 타 학생을 괴롭히거나 괴롭히려고 시도함.본 항목에서 괴롭힘이란 교육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든 아니든 학생단체 또는 조직에서 신입 신고식 또는 예비 신입 신고식의 수단으로 행해지는 행위를 말하며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학생에게 심신의 상해, 창피 또는 굴욕을 야기시키는 심각한 신체 또는 정신적 해를 초래할 수 있다. 본 항목의 괴롭힘에는 스포츠 행사 또는 학교 후원 행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r) 약자 괴롭히기 행위. 이 항목에서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약자 괴롭히기"란 글 또는 전자기기를 통한 대화를 포함하여, 그리고 48900.2, 48900.3 또는 48900.4에 규정된 대로 한 학생 또는 학생 그룹에 의해 행해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행위를 포함하여 아래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결과를 가져 오거나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또는 만연적 신체 또는 구두적 행위를 의미한다.

가. 온당한 학생(들)이 그의 신체 또는 물건이 해를 받는다는 두려움을 갖게 한다.

나. 온당한 학생의 신체 또는 정신적 건강에 상당한 해를 끼친다.

다. 온당한 학생의 학업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끼친다.

라. 온당한 학생이 학교가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 또는 특권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받는데 상당한 지장을 끼친다.

2. (가) "전자 행위"란 전화, 셀폰, 기타 무선 대화기, 컴퓨터 또는 페이저 등을 포함한 전자기기를 통한 아래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의 전달을 의미한다.

(ㄱ) 메시지, 텍스트, 소리 또는 이미지

(ㄴ) 소셜 인터넷 웹사이트 상의 포스트 등

(I) burn page에 게시하거나 그런 페이지 만들기. "Burn Page"란 1항에 열거된 것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효과를 얻기 위해 만들어진 인터넷 웹사이트를 말한다.

(II) 1항에 열거된 것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효과를 얻기 위해 실제 다른 학생의 그럴듯한 가상을 만든다. "그럴듯한 가상"이란 한 학생을 왕따시킬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동의없이 그를 모방하여 타 학생들이 그 학생이 만들어진 가상의 학생이라고 믿었거나 믿게 하는 것이다.

(III) 1항에 열거된 것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효과를 얻기 위해 거짓 프로파일을 만든 학생이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다른 학생의 유사성 또는

(나) (I) 및 (가)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행위는 단지 그 것이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었다거나 현재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다하여 만연하는 행위가 되지 않는다.

3. "온당한 학생"이란 자기 연령대의 사람의 행위에 있어서 평균적인 배려, 능력 및 판단력을 보이는 예외적인 필요를 가진 학생 또는 예외적인 필요를 가진 같은 연령의 학생을 포함하나 이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s) 학생의 행동이 교육감이나 교장의 관할하에 있는 학교 내 또는 타 교육구 내에서 일어나는 학교 활동 또는 학교 출석과 관련되지 않는 이상 본 항에 열거된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도 학생은 정학이나 퇴학될 수 없다. 학생은 본 항에 열거되고 아래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그러나 이 시간들에만 한정되지 않은, 학교 활동이나 출석과 연관된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정학 또는 퇴학을 받을 수 있다.

1. 학교 운동장에 있는 동안
2. 등·하굣길 동안
3. 교정 안밖에서의 점심시간 동안
4. 학교 후원 행사 참여 또는 그 곳에 오가는 동안

(t) 형법 제 31조에 규정된 대로 타인에 대한 신체상해, 또는 시도를 도와주거나 교사하는 학생은 본 항에 따라 퇴학은 아니라도 정학될 수 있다. 그러나 희생자가 큰 신체상해를 입은 신체 폭력 범죄의 보조자 또는 교사자로서 청소년 법정에 의해 판정받은 학생은 (a)항에 따라 징계된다.

(u) 본 항에 언급되는 학교 자산에는 전자 서류 및 데이타 베이스가 포함되며 이것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v) 교육감이나 교장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본 항에 의거하여 징계 받는 학생에게 정학이나 퇴학 대신 연령에 적합하며 교육법 48900.5에 명시된 학생의 비행을 다루고 교정하도록 마련된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

(w) 입법의 취지는 무단결석, 지각 또는 학교활동에 불참하는 학생에 대해 정학 또는 퇴학의 대안을 부과하는 것이다.

**가주 교육법 48900.2조**

48900조에 명시된 이유에 추가하여 학생은 교육감 또는 그가 등록되어 있는 학교의 교장이 그가 212.5조에 정의된 성희롱을 범했다고 판단하면 정학되거나 퇴학이 권고될 수 있다.
본 챕터의 목적상 212.5조에 설명된 행위는 희생자에게 그의 학업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위협적이고 적대적이고 또는 불쾌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정도로 심각할 수 있으므로 같은 성별의 분별있는 사람에 의해 다루어져야 한다. 본 항은 유치원생 및 1-3학년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주 교육법 48900.3조**

48900 및 48900.2조에 명시된 근거에 추가하여 4-12학년생은 교육감 또는 그가 등록되어 있는 학교의 교장이 그가 233조 (e)항에 정의된 대로 증오범죄를 유발, 시도, 협박 또는 참여했다고 판단하면 정학되거나 퇴학이 권고될 수 있다.

**가주 교육법 48900.4조**

48900 및 48900.2조에 명시된 근거에 추가하여 4-12학년생은 교육감 또는 그가 등록되어 있는 학교의 교장이 그가 교직원이나 학생들에게 위협적 또는 적대적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실질적으로 학업을 방해하고 상당한 무질서를 초래하고 교직원이나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실제적이고 상당히 기대된 효과를 가져올 정도로 심각한 괴롭힘, 협박 또는 위협 행위를 의도적으로 범했다고 판단하면 정학되거나 퇴학이 권고될 수 있다.

**가주 교육법 48900.7조**

(a) 48900, 48900.2, 48900.3 및 48900.4조에 명시된 이유에 추가하여 학생은 교육감 또는 그가 등록되어 있는 학교의 교장이 그가 교직원이나 학교 재산, 또는 그 모두에 대해 테러 위협을 가했다고 판단하면 정학되거나 퇴학이 권고될 수 있다.

(b) 본 항의 이해를 위해 "테러 위협"에는 서면으로든 구두로든 성명 발표가 포함되는데 그것을 비록 실행할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협으로서 받아들여지게 하려는 구체적 의도하에 죽음, 타인에 대한 심한 신체상해 또는 $1,000이상의 재산 파손을 초래하는 범행을 행하겠다는 의도적 위협을 하는 사람에 의한 것인데 그것은 표면상, 그리고 그 성명이 발표되는 상황 하에서 그것이 매우 명료하고,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이어서 위협 대상에게 테러 목적의 중대성 그리고 위협의 즉각적 실행 가능성을 전달하여 그가 자신이나 가족의 안전 또는 학교, 자기 개인이나 가족의 재산 보호에 대해 지속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한다.

**가주 교육법 48900.5조**

(a) 48922.2조에 설명된 바와 같이 감독된 정학을 포함하여 정학은 적절한 행위를 가져오기 위한 기타 교정 수단이 실패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된다. 교육구는 사용된 다른 교정 수단들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학생 기록부에 보관할 수 있으며 그것은 49069조에 따라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나 학생은 56026조에 설명된대로 교장 또는 교육감이 예외적 필요를 가진 학생을 그가 48900조의 (a), (b), (c), (d), 또는(e)항을 범했거나 그의 존재가 타인에 위험이 된다고 결정할 경우 첫 위반시 48900조에 설명된 어떤 이유로 인해 미국연방 법전 타이틀 20의 1415조에 따라 정학될 수 있다.

(b) 기타 교정 수단에는 다음 것들이 포함되나 이것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1) 교원, 학부모/후견인 및 학생 간의 면담

(2) 케이스 관리 및 상담을 위해 학교 카운슬러, 심리학자, 사회 복지사, 아동 복지사 또는 기타 학교지원 서비스인 소개

(3) 학생 및 학부모와 협동으로 행동을 평가하고 행동 문제를 다룰 개별 계획안을 수립하고 실행할 연구팀, 지도팀, 자원팀 또는 기타 중재 관련팀

(4) 개별교육 프로그램 작성 목적을 위해 또는 1973년의 연방 재활법(29U.C.S. 794(a) 참조)의 504조에 준하여 채택된 계획안을 포함한 포괄적 심리 또는 교육심리 평가 의뢰

(5) 친사회적 행동 또는 분노 관리를 가르치는 프로그램 등록

(6) 정의 회복 프로그램 참여

(7) 교정에서 수업일 동안 실시하는 단계적 중재로 긍정적 행동 지원 접근

(8) 특정 행동 문제를 다루는 방과후 프로그램 또는 학생을 긍정적 활동 및 행동에 노출시킨다. 여기에는 지역 및 커뮤니티 단체와 협조하에 운영되는 것들이 포함되나 이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9) 48900.6조에 설명된 대안 가운데 하나

**긍정적인 행동 중재 및 지원(PBIS)**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정학에 대한 대체로 긍정적인 행동 중재 및 지원을 장려한다. 긍정적인 행동 중재 및 지원은 모든 학생이 존중하며 책임있는 그리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지원하는 행동들을 배우고 연습을 돕도록 전교 및 학급 전략들을 사용하는 데 집중한다.

**양육권 법 통고**

캘리포니아 법(가족법 3010) 하에서, 각 부/모는 자신의 자녀 양육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는 가족법 3010 준수에 따른 글렌데일 교육구의 방침으로 적절한 신분증의 제시 하에, 부/모 누구라도 학교로부터 아동을 데려가거나 또는 아동의 건강, 교육 및 안녕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

가족법 302 은 비양육 부/모가 자신의 자녀와 관계하는 학교 기록들에 대한 접근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학교가 소지한 의료 기록을 포함하여 부/모 누구라도 자신의 아동의 학교 기록들에 접근을 허용할 것이다.

아동 방문 또는 양육 및/또는 아동에 대한 정보 접근에 대한 부/모의 권리에 대해 법원이 접근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한 경우, 각 자녀의 학교에 판독이 가능한 도장이 찍힌 법정 명령서, 판사가 서명한 사본의 즉각적인 제공은 양 부모의 책임이다. 법정 명령서의 사본은 명령을 내린 법원의 사무실에서 취득할 수 있다.

서명된 법정 명령 확인없이 한쪽 부모의 말 또는 서면 주장은 학교가 다른쪽 부모의 아동 및/또는 아동의 기록에 대한 접근을 거절함에 있어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의 학교들은 가장 최근에 제공된 서명된 양육권 법정 명령을 따를 것이나 명령의 부재 시, 위의 언급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부/모에게 양육권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준다.

부모는 양육권 분쟁에서 학교 인사를 포함하는 것을 피하도록 요청된다. 학교가 양육권에 관해 최신 정보를 갖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확실치 않은 부/모는 학교가 판독이 가능한 가장 최근의 법정 명령서 사본을 제공받았는지의 확인을 위해 자녀 학교에 연락해야 한다.

## 흡연 방지교육 (TUPE)

가주 건강 및 안전법 104420 및 104495에 따라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금연 방침을 실시한다. 학생, 교직원 및 방문객의 흡연은 교육구 시설 내에서 항상 금지되며 이 방침의 집행에 관한 문의는 학교 행정관에게 할 수 있다.

## 대안 학교

**가주 교육법 58501**: 교육구는 학부모에게 대안 학교의 기회에 대해 통고하도록 요구된다. 가주 법은 모든 교육구가 대안 학교를 제공할 것을 허용하며 교육법 58500는 대안 학교를 다음 사항들의 이행을 위해 운영되는 하나의 학교 또는 학교 내의 독립된 학급 그룹으로 정의한다.

- 학생들의 자립심, 솔선력, 친절, 자발성, 임기응변력, 용기, 창의성, 책임감 및 기쁨의 긍정적 가치들을 개발시킬 기회들을 최대화한다.
- 학생들이 스스로의 향학열로 학습할 때 최상의 학습이 이루어짐을 인식한다.
- 학생 스스로의 동기유발을 최대화하고 학생들이 자기 시간에 자신의 관심 분야를 추구할것을 권장하는 면학 분위기를 유지한다. 이들 관심분야들은 학생에 의해 전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찾아질 수도 있고 선택한 학습 프로젝트 교사들에 의한 가르침을 통해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찾아질 수도 있다.
- 교사, 학부모, 및 학생들이 학습과정과 내용들을 협동적으로 개발하는 기회를 최대화한다. 이 기회는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
-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학교가 위치한 지역사회 등을 포함하여 변하는 세계에 계속 대응해 가는 기회를 극대화한다.

학부모, 학생 또는 교사들이 대안 학교에 대해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는 경우, 카운티 교육감, 교육구 행정실 및 각 학교의 교장실에서 관련 법의 사본을 얻어볼 수 있다.

**가주 교육법, 48208, 48980, 48206.3**: 일시적으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해 집과 병원 학업지도가 가용하다.

## 성희롱

**가주 교육법 제231.5조**: 각 교육구가 성희롱에 관한 문서화된 방침을 수립하도록 요구하며 글렌데일 통합 교육구 교육위원회 방침 5145.7(하단)은 이 요구에 준한 것이다.

**성희롱(교육구 방침 5145.7)**: 교육구는 교육구 내 또는 교육구로부터의 직원, 학생 또는 기타 사람에 의한 어떠한 학생에 대한 성희롱 및 성별에 근거한 괴롭힘(집단적성희롱)도 금지하며 또한 교육구의 불만제기 절차에 있어서 불만, 증언, 도움 또는 조사에 참여하는 기타 사람에 대한 보복 행위를 금지한다. 교육감 또는 대리는 모든 교육구 학생들이 성희롱 및 성별에 근거한 괴롭힘에 대한 연령에 적합한 지도 및 정보를 받도록 해야 하며 그것은 다음의 것들을 포함해야 한다.

1. 어떠한 행동이 성희롱 및 성별에 근거한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행동은 동성 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2. 학생이 성희롱을 참고 견뎌선 안 된다는 명료한 메시지
3. 성희롱의 희생자가 비록 침묵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성희롱 목격 시 보고하도록 권장한다.
4. 교육구의 불만 조사 절차 및 성희롱을 보고할 사람에 대한 정보

교사들은 학생의 연령에 맞게 이 방침을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그들이 어떤 형태의 성희롱도 참을 필요가 없음을 알려야 한다.

교육감 또는 대리는 성희롱에 대한 어떤 불만이든 행정규정 5145.7에 따라 즉시 조사되도록 해야 하며 그는 성희롱이 발생했다고 판정될 경우 그 성희롱을 멈추게 하고 희생자에게 가해진 영향을 다루기 위해 신속 정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교육구 내 또는 교육구로부터의 어떤 사람에게 성희롱을 가하는 학생은 퇴학에까지 이르는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성희롱을 묵인하거나 행하는 직원은 해고에까지 이르는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다(글렌데일 통합교육구 방침 4119.11, 4219.11, 4319.11 참조)

성희롱에 관한 모든 불만 및 주장은 조사 또는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경우 외에는 대외비로 간직된다(5 CCR 4964).

교육감 또는 대리는 교육구가 학교들에서 반복적 성희롱을 주시하고 다루고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보고된 성희롱 케이스들의 기록을 보관한다.

**성희롱 및 성별에 근거한 괴롭힘(교육구행정규정 5145.7)**: 교육구는 성희롱 및 성별에 근거한 괴롭힘을 모두 금지한다.

가. 금지된 성희롱에는 아래 상황에서 성적 추근댐, 성적 호의 요구, 성적 성질의 구어, 시각 및 신체적 행위들이 포함되나 이것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1. 그 행위에 대한 순응은 노골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개인의 취업, 학업적 신분 또는 진도의 조건이 된다.
2. 그 행위에 대한 순응 또는 거부는 학업 또는 취업 결정의 근거로 사용된다.
3. 그 행위는 상대방의 학업적 또는 업무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위협적 적대적이거나 불쾌한 교육 또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을 갖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
4. 상대방의 그 행위에 대한 순응 또는 거부는 학교에서 또는 학교를 통해 가용한 베네핏 서비스, 아너스,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관해 상대방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결정을 위한 근거로 사용된다.

나. 교육구에서 금지되고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들에는 다음 것들이 포함된다.
1. 불쾌한 곁눈질, 성적 장난질 또는 추근거림
2. 불쾌한 성적 비방, 욕, 위협, 막말, 비하어 또는 성적으로 모멸적인 말
3.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구체적 언급 또는 기타 지나친 사적 대화
4. 성적 농담, 이야기, 그림, 사진 또는 몸짓
5. 성적 소문 퍼뜨리기
6. 대부분 한 쪽 성으로 이루어진 학급에 등록된 학생에 대한 놀림 또는 성적 언급
7. 상대방의 신체 또는 옷을 성적으로 만지기
8. 상대방의 움직임을 가로 막거나 구석으로 몰기
9. 교육적 환경에서 성적으로 암시적인 물건 보여주기
10. 교육구의 성희롱 방침 위반을 보고하거나 성희롱 불만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보복 행위

다. 성별에 근거한 괴롭힘은 비록 그 행위가 본질에 있어서 성적일 필요는 없지만 성에 근거한 구어, 비구어 또는 신체적 공격, 위협 또는 적대적 행위를 포함한다. 금지된 행위에는 상대방의 성에 대한 하나의 편견적 특징으로서 인식되는 것을 보여주거나 남자다움 또는 여자다움에 대한 편견적 개념과 부합되지 않음에 대해 그를 괴롭히는 것이 포함된다.

라.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에는 다음 것들이 포함된다:
1. 학생이 이성으로 인식되는 몸가짐을 보이거나 의복을 착용했다고 해서 그에게 비하적인 말을 하거나 공격하기
2. 상대방이 전형적으로 이성이 선호하는 스포츠에 참여한다고 해서 보이는 적대감
3. 상대방의 성별 때문에 그가 어느 특정 학업 분야에 등록을 못하도록 위협하기
4. 어느 과외활동이 전형적으로 이성의 학생들이 선호한다고 해서 그 활동에 참여하려는 상대방을 왕따시키기
5. 상대방이 어느 학과목에서 힘들어 할 때 그의 성별을 가진 학생들은 그 학과목을 원래 잘못한다고 놀리기

마. 교육구의 성희롱 방침 5145.7 사본은:

1. 각 학사년 초 학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보내지는 통고서류에 포함된다.
2. 각 학교 교장실 및 학교의 기타 적절한 장소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된다.
3. 각 학기 및 여름학교 초에 신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의 일부로서 제공된다.
4. 학교 또는 교육구의 포괄적 규칙, 규정, 절차 및 품행표준에 대한 학교 또는 교육구 출판물에 실린다.

바. 교장 또는 대리는 교육구의 성희롱 방침 이행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그것들에는 다음 것들이 포함된다:

1. 저속하고 불쾌한 낙서 지우기
2. 필요 시 교직원 훈련 및 학생 지도 또는 카운슬링 제공
3. 필요 시 적절한 징계조치 취하기
4. 불만 및 불만 해소를 위해 취한 조치의 서류화 및 기록 유지

사. 교육구는 가능한 성희롱에 대한 통고에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

1. 성희롱을 받았다고 믿거나 목격한 학생은 어느 교직원에게든 통고하거나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직원은 그것을 수업일 2일 이내에 교육구의 비차별 조정관/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추가로, 어느 학생이 관여된 성희롱 사건을 목격한 직원은 그 희생자의 불만 제기와 상관없이 그 사건을 수업일 2일 이내에 비차별 조정관/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가능한 성희롱 통고를 받고 수업일 수 10일 이내에 비차별 조정관/교장은 불만제기인 및 기타 관련 증인(예: 성희롱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성희롱 가해자라고 주장되는 사람 및 그 성희롱에 대해 알고 있을 수 있는 사람)과의 면담 및 관련 물리적 증거(예: 편지/기타 대화, 사진, 디지털 이미지 또는 낙서)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 완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사 완료 후 수업일 수 5일 이내에 비차별 조정관/교장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장되는 성희롱의 발생 여부, 그 행위의 심각 정도와 범위, 가해자의 신분 및 희생자가 입은 해를 결정한다.
3. 비차별 조정관/교장은 조사 결과 및 조사를 실시하고 결론에 달하게 된 구체적 단계들을 서류화한다.
4. 비차별 조정관/교장은 조사 완료 후 수업일 수 15일 이내에 불만 해결을 위해 필요한 해결 조치를 결정한다. 예를 들면 가해자 징계, 희생자 및 가해자 카운슬링, 적대적 환경 제거를 위해 마련된 중재 및 성희롱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며 이러한 조치는 필요 시 즉시 실시된다.
5. 비차별 조정관/교장은 해결 조치의 효율성을 주시 점검하며 그것이 비효율적일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한다.
6. 비차별 조정관/교장은 불만 제기인에게 학교/교육구의 발견 사실, 결정 및 근거를 서면 통고한다.
7. 발견 사실에 대한 통고서는 불만 제기인이 교육구의 발견 사실 및 결정 접수 후 수업일 수 1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함으로써 그가 비차별 조정관/교장의 발견 또는 결정에 이의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알린다. 교육감은 이의제기를 검토하고 불만 제기인에게 수업일 수 10일 이내에 자신의 결정을 통고한다.

## 일관적 불만 제기절차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방침 1312.3:** 교육위원회는 교육구가 교육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주 및 연방 정부의 법과 규정을 준수할 일차적 책임을 갖고 있음을 인식한다. 교육구는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에 준하여 지역 차원에서 이같은 법의 비준수에 대한 주장 및/또는 비합법적 차별대우, 괴롭힘, 협박 및 약자 괴롭히기 주장에 대한 불만을 조사하고 해결을 모색한다. 교육구는 교육 활동 참여를 위한 학생 비용, 예치금 또는 기타 부과금 지불 요구 금지, 학교 안전 계획안 수립 및 채택에 대한 요건의 비준수 및/또는 통합된 카테고리칼 보조 프로그램, 아동 발달 및 아동 영양 프로그램, 특수교육 프로그램 및 기술 경력과 기술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주 또는 연방 법의 차별대우를 주장하는 불만을 다룰 때 일관적 불만제기절차를 따른다.

1. 교육구는 주 정부 재정보조를 받는 교육구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있어서 실제 또는 인식된 성, 성적 경향, 성별, 민족, 인종, 선조, 출신국, 종교, 피부색, 정신/신체 장애, 나이 또는 이들 실제 또는 인식된 특징의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을 가진 개인이나 그룹과의 관련에 근거하여 교육법 200및 220 및 정부 규정 11135하에 구분된 어느 보호된 그룹(소수민족)에 대한 비합법적 차별대우, 괴롭힘, 협박, 및 약자 괴롭히기를 주장하는 불만을 다룰 때 일관된 불만제기 절차를 따른다(5CCR 4610).

2. 교과서 또는 수업 교재의 충분성, 학생이나 교직원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위협을 주는 위급 또는 시급한 시설 상태, 교사 공석, 잘못된 학과 담당 및 12학년 이수 시 고등학교 졸업 시험의 한 부문 또는 양 부문에서 합격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교육구의 학업지도 및/또는 서비스 제공 부족과 관련된 불만은 교육구의 윌리엄스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에 준하여 조사된다. (AR 1312.4)

교육 위원회는 불만제기 절차 참여를 위한 불만제기서 제출, 차별대우, 협박, 괴롭힘 및 약자 괴롭히기 사례 신고에 대한 어떤 형태의 보복 행위도 금지하며 그러한 참여는 불만 제기인의 신분, 성적 또는 학업 과제에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교육위원회는 가능한 한 언제라도 학교 차원에서 불만제기 초기에 비공식적으로 해결할 것을 권장한다.

교육위원회는 중립적인 중재자가 종종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타협을 제안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에 준하여, 불만제기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동의할 때마다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이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중재 결과들이 주 및 연방 법 및 규정과 일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교육위원회는 학생 및 직원의 사생활 보호권을 인식하고 존중한다. 차별대우, 협박, 괴롭힘 및 약자 괴롭히기에 대한 불만제기는 당사자들에 대한 비밀 보호 및 사실과 절차의 보존 방식으로 조사하며 여기에는 교육감이나 대리가 조사 또는 절차 이행 시 케이스 별로 정하는 대로 필요한 한도 외에는 불만 제기인의 신분이 비밀로 유지할 것이 포함된다. 차별대우, 괴롭힘, 협박 및 약자 괴롭히기를 주장하는 모든 불만제기에 대해 적절한 경우,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불만제기의 조사가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비밀로 불만 제기인의 신원을 유지할 수 있다.

교육감 또는 대리는 불만 조사에 지명된 직원들은 법 및 그들이 책임을 맡은 법 및 프로그램에 조예가 있는 사람이도록 해야 한다.

교육구의 윌리암스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 행정 규정 1312.4는 다음과 관련된 모든 불만의 조사 및 해결에 관해 사용될 수 있다.

1. 교과서 및 교재물의 충분성
2.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위협을 주는 위급 또는 시급한 시설 상태
3. 교사 공석 및 잘못된 학과 담당
4. 12학년 이수 시 고등학교 졸업 시험의 한 부문 또는 두 부문 모두에 합격하지 못한 모든 학생에 대한 교육구의 학업지도 및/또는 서비스 제공에서의 불충분성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행정 규정 1312.3:**

**취지 및 범위**

가. 타이틀 5 규정 제4600-4687조에 설명되고 교육구의 방침 및 절차에 부합되는 이 절차는 비합법적 차별대우, 괴롭힘, 협박, 약자 괴롭히기 및 학생 비용에 관한 법의 비준수 주장을 포함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연방 또는 주정부의 법이나 규정에 대한 지방 교육기관의 위반에 대한 불만의 제기, 조사 및 해결에 적용된다. 이 챕터의 취지는 아래 프로그램들을 포함하는 주 또는 연방 기금을 수령하는 특정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대한 불만 제기절차에 대한 일관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1. 교육법 64000조 (a)항에 열거된 통합된 카테고리칼 보조 프로그램
2. 교육법 52300-52480조에 준하여 설립된 경력/기술 교육
3. 교육법 8200-8493조에 준하여 설립된 탁아 프로그램
4. 교육법 49490-49560조에 준하여 설립된 아동 영양 프로그램
5. 교육법 56000-56885 및 59000-59300조에 준하여 설립된 특수교육 프로그램

6. 주 정부 기금을 직접 받거나 재정 보조를 받는 지역 학교가 실시하는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있어서 연령, 실제 또는 인식된 성, 성적 경향, 성별, 민족, 인종, 국적, 종교, 피부색, 정신 또는 신체적 장애, 형사법의 증오범죄의 정의에 포함된 특징들에 근거한, 또는 한 개인의 이들 실제 또는 인식된 특징들의 한 두가지를 가진 사람이나 그룹과의 연관에 근거한 불법적 차별대우, 괴롭힘, 협박 및 약자 괴롭히기 또는 학생 비용에 관한 법의 비준수를주장하는 불만.

학생 비용은 가족의 지불 능력, 지불 의사 또는 특별 면제 요청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교육 활동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주 법 및 헌법 규정을 위반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나 후견인에게 부과되는 비용, 보증금 또는 기타 요금들을 말한다. 학교, 교육구, 차터 스쿨 또는 카운티 교육청에 의해 제공되는 교육 활동은 교육의 교과과정 및 과외 활동을 포함하나 이에만 국한되지 않는 교육의 기본적 부분을 구성한다.

학생 비용은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하나 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학교나 클래스 등록 조건으로, 또는 클래스나 활동이 선택과목이나 필수과목 또는 학점 취득을 위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클래스나 과외 활동 참여 조건으로 학생에게 부과되는 비용
- 자물쇠, 락커 , 도서 클래스 장비, 악기, 의복 또는 기타 교재나 장비의 취득을 위해 학생에게 요구되는 보증금 또는 기타 지불금
- 교육 활동과 관계된 자료물, 물품, 장비 또는 의복의 취득을 위해 학생에게 요구되는 구매

나. 아래 경우는 불만제기 절차가 적용되지 않으며 관련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1. 아동학대 주장은 해당 사회복지국(DPSS) 보호서비스 부서 또는 경찰국에 의뢰된다.
2. 아동발달 프로그램에 관한 보건 및 안전 관련 불만은 면허 시설의 경우 공공사회복지부 그리고 비면허 시설의 경우 해당 아동발달 지역 행정관에게 의뢰된다.
3. 아동 영양 프로그램 또는 1972개정 교육법 타이틀9을 수반하는 차별대우 사안은 미연방 인권부(OCR)로 넘겨지며, 타이틀 9 불만은 그에 대한 주정부의 차별대우 법 또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미연방 인권부로 넘겨진다. 이해, 동의 각서를 통해 타협되지 않으면 이 불만에 대한 예비 심리 및/또는 조사는 미연방 인권부에 의해 실시된다. 불만 제기인은 자신의 불만이 교육감 또는 대리인에 의해 미연방 인권부로 넘기는 경우 배달 증명 우편으로 통고받는다.
4. 고용 차별대우 불만은 CCR 98410조 타이틀 22에 따라 주 정부 공정고용/주거부(DFEH)에 보내지며 불만 제기인은 DFEH 이전에 대해 배달증명 우편으로 통고 받는다.
5. 사기에 대한 주장은 DFEH 디렉터 및 법률 부서에 의뢰된다.

다. 이 절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1. "이의제기" - 불만인이 교육구 교육위원회 또는 가주 교육부에 교육구 결정의 재고 또는 재조사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
2. "불만제기인" - 주 또는 연방정부 기금을 직접 받거나 재정 보조를 받는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있어서 불법적 차별대우 주장을 포함하여 주 또는 연방법이나 규정 위반에 대한 불만 주장을 서면 제기하는 사람. 그의 정식 대표 또는 관련된 제3자. 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3. "불만" - 불법적 차별대우 주장이 포함될 수 있는 연방 또는 주정부 법이나 규정 위반을 주장한 서명된 진술서.
4. "불만조사"- 불만 관련 자료 조사 목적으로 교육구가 실시하는 행정절차.
5. "불만제기절차" - 교육구가 불만을 처리하고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내부 절차.
6. "일" - 달리 언급이 없는 한 역일을 말한다.

**불만 관리**

가. 학부모, 학생 및 일반인은 우선 학교 행정관 또는 해당 프로그램 매니저와 비준수 주장에 대한 불만 또는 우려점을 논의하도록 권고되며 그런 논의가 해결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 불만을 서류 형태로 교육구 차원으로 갈 수 있다. 교육구는 일차적으로 연방 및 주 법/규정 준수에 책임이 있으며 불만 조사에 위임된 사람이 그가 조사 위임된 법/프로그램에 대해 잘 알고있는 사람이도록 한다.

나. 불만제기인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공식 불만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이 절차에 따른 불만 제기는 223 N. Jackson St., Glendale, CA 91206에 위치한 교육구 교육감 또는 대리인에게 제출한다.
   ㄱ. 교육구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접수 장부를 만들고 접수되는 각 불만제기서에 코드 번호를 붙이고 날짜 스탬프를 찍는다.
   ㄴ. 교육구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불만조사 동안 관련자 및 사실을 대외비로 유지한다.
2. 불법적 차별대우. 괴롭힘, 협박 및 약자 괴롭히기를 주장하는 그러한 불만은 주장되는 차별대우가 발생한 날 또는 불만인이 주장되는 차별 대우에 대해 알게 된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되야 한다.
   ㄱ. 그러한 불만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불법적 차별대우, 괴롭힘, 협박 및 약자 괴롭히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 또는 어느 개인 또는 특정 개인 그룹이 금지된 차별대우, 괴롭힘, 협박 및 괴롭히기를 당했다고 믿는 사람에 의해 제기되야 한다.
3. 학생 비용에 대한 불만은 학생 비용과 관계된 법의 비준수에 대한 주장을 보강하는 증거로 이어지는 증거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익명으로 제출될 수 있다.
4. 불만제기인이 문맹 또는 기타 장애 조건으로 인해 서면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감 또는 대리인이 서류 작성과 제출을 돕는다.

다. 불만 접수 5일 이내에 대리인은:

1. 불만서가 적시에 제출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ㄱ. 불만서가 적시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기간을 연장 받지 않은 이상 불만 접수를 거부한다. 기간 연장 요청은 연장 사유와 함께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요청되야 하며 교육감은 허용된 마감일이 종료된 후, 90일이 초과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당한 이유에 대해 불만서 제출 시기를 연장해줄 수 있다.
   ㄴ. 불만서가 시기에 맞춰 제기되었다면, 대리인은 불만 조사에 착수한다.
2. 본 절차에서 다루어질 수 없는 불만에 대해선 적절한 기관에 불만인을 소개한다.
3. 아동학대에 관한 불만제기는 곧바로 적절한 기관에 넘겨지나 그 외에는 프로그램 매니저를 지역 조사 실시에 위임한다.
4. 불만 제기인에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인(불만에 대한 대외비 정보를 청취 및 판정할 제3자)의 가용성에 대해 통고하며 중재에는 다음 요소들이 포함된다. 즉 훈련된 중재인, 법 및 규정에 준한 합의, 각 당사자에게 합의서 전달, 준수를 위한 후속 합의 조항 및 60일 이내 종료.
5. 불만 제기인에게 그가 영어 또는 모국어로 응할 수도 있는 영어 및 그의 모국어로 된 교육구 방침 및 이의 신청 절차 사본을 전달한다.

**불만 조사 및 해결**

가. 각 불만서는 접수 후 15일 이내에 프로그램 매니저가 조사에 착수하며 그는 다음 사항들을 이행한다:

1. 불만 제기인이나 그의 대리 또는 그 양자 및 지역 교육대표가 관련 정보 또는 증거를 구두로 또는 영어나 불만 제기인의 모국어로 작성하여 제출할 기회를 주며 그것은 영어 또는 불만 제기인의 모국어로 응답될 수 있다.
2. 관련 당사자들이 회동하여 불만에 대해 논의하거나 서로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증인에게 질의할 기회를 마련한다.
3. 주장되는 위반을 목격한 증인 또는 그 위반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개인으로부터 진술을 받는다.
4. 주장되는 위반에 대한 정보 또는 증거를 제공할 서류들을 검토한다.
5. 교육감 또는 대리인에게 불만에 대해 수집된 증거에 근거하여 발견된 사실 및 불만의 처리, 시정조치(있는 경우) 및 불만 처리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포함된 서면 보고서와 권고사항들을 작성하고 제출한다.

나. 불만에 대한 조사 동안의 협조

1. 불만 제기인이 불만 주장과 관련된 서류 또는 기타 증거를 조사관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조사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거나 또는 기타 조사 방해 행위를 할 경우, 그것은 불만 주장을 뒷바침할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기각을 초래할 수 있다.

2. 교육구가 조사관에게 불만 주장과 관련된 기록 및/또는 기타 정보에 대한 접근을 막거나 조사에 대한 협조를 거부 또는 기타 조사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수집된 증거에 근거하여 위반이 발생했다는 사실의 발견을 초래할 수 있고 불만 제기인에게 유리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다. 불만에 대한 반응

1. 불만 접수 30일 이내에 교육구 교육감 또는 대리인 불만 제기인에게 영어와 그의 모국어로 된 교육구의 조사에 따른 결정 제안서를 보내며 그는 이에 영어 또는 그의 모국어로 응할 수 있다.
2. 그 제안된 결정에는 시정조치(있는 경우), 처리에 대한 이론적 근거 및 불만 제기인이 제안된 결정을 교육위원회나 가주 교육부에 이의 신청할 권리 및 후속 절차를 포함하여 불만에 대해 수집된 증거에 근거하여 발견된 사실, 법의 결론 및 불만의 성격이 들어 있다.
3. 불만 제기인이 결정 접수 후 7일 이내에 교육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그것은 최종적인 것이 된다. 그러나 불만 제기인은 그 결정이 최종적인 된 후 15일 이내에 가주 교육부에 그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할 권리를 보유한다.
4. 각 불만은 불만 제기인이 서면을 통해 시기를 연장해 받지 않은 이상 교육위원회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을 포함해서, 불만 제기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해결된다.
5. 불법적 차별대우, 괴롭힘, 협박 및 왕따에 관한 불만에 있어서 불만 제기인은 가주 교육부에 이의 신청을 한 지 60일이 경과 되면 민사법을 통한 해결 추구권을 가지나 법원의 명령이 있을 경우, 이유에 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
6. 학생 비용에서 타당성이 발견되면, 공립 학교는 주 교육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규정들을 통해 구축된 절차에 따라 해당되는 모든 학생, 학부모 및 후견인들에게 해결책을 제공해야 하며 이에는 해당되는 모든 학생, 학부모 및 후견인들에게 전액 상환 보장에 대한 공립학교의 합당한 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교육위원회에의 이의 신청

1. 불만 제기인이 제안된 결정에 불복할 경우, 그는 7일 이내에 교육위원회에 제안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교육위원회는 정기 위원회 모임에서, 또는 불만에 대해 응답을 해야 하는 60일이란 기간 제한에 응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모임에서 그 사안을 다룬다.
2.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제안된 결정을 교육위원회 모임 회의일정에 올린다.
3.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불만 제기인과 그의 대표 및 교육구 대표에게 제안된 결정이 검토될 교육위원회 모임 일시를 통고한다.
4.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제안된 결정이 주장되는 차별대우의 희생자(들)이라고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보복행위를 초래하거나 주장되는 위반 사건과 연루된 학생 또는 직원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일반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만 제기인 또는 그의 대표가 공개 모임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 제안된 결정이 비공개로 논의됨을 불만 제기인에게 통고한다.
5.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불만 제기인 또는 그의 대표가 위원회의 비공개 심의에 출두하여 자기 견해를 피력할 수 있음을 그에게 알린다.
6.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위원회가 제안된 결정을 수용할 때 불만 제기인이 공개모임에 참석할 권리가 있음을 그에게 알린다.
7.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불만제기인에게 보복으로부터의 보호를 보증한다.

마. 교육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을 이행한다:

1. 확정된 결정을 최종적인 것으로 인정하거나 그것을 거부하고 다른 시정조치를 지시한다.
2. 불만제기인이 서면을 통해 기간 연장을 받지 않은 이상 교육위원회는 불만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교육 위원회의 결정을 불만제기인이 영어 또는 그의 모국어로 응할 수 있는, 영어 및 그의 모국어로 된 서면으로 통고한다.
3. 불만 제기인은 교육위원회의 조치 (15)일 이내에 가주 교육부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가지며 이는 불만 제기서 사본 및 교육구의 불만에 대한 결정이 포함되야 함을 영어와 그의 모국어로 알린다.

**가주 교육부에의 이의신청:**

가. 불만 제기인은 교육구 또는 교육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대해 교육구 결정이 최종 적이 되는, 또는 교육 위원회 결정 통고 후, 15일 이내에 가주 교육부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1. 불만 제기인은 불만서, 교육구의 결정 및 위원회의 각 결정 사본을 첨부한다.

나. 가주 교육부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해 통고 받으면 교육구는 아래 서류 사본들을 가주 교육부에 전한다.

1. 불만서 원본
2. 지역 교육기관의 결정서 사본
3. 지역 교육 기관 결정에서 다루어 지지 않은 경우, 지역 기관에 의해 실시된 조사의 성격 및 범위의 개요.
4. 교육구의 조사 서류 사본
5. 불만 해결을 위해 취한 조치 보고서
6. 지역 교육기관의 불만 제기절차
7. 가주 교육부가 요구할 수도 있는 기타 관련 정보

**통고:**

가. 교육구 불만제기 절차 통고는 학생, 직원, 학부모, 후견인, 교육구 자문위원회, 학교 자문위원회, 적절한 사립 학교 임원이나 대표 및 기타 관련있는 사람들에게 매년 주어진다.

나. 그러한 통고문은 영어 및 가능할 때마다 또는 법이 요구할 때마다 받는 사람의 모국어 또는 가능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전달된다.

다. 그러한 통고문에는 다음 모든 사항들이 포함된다

1. 절차에 따라 제기된 불만은 교육구 교육감 또는 대리인에게 전달
2. 조사를 위해 다른 기관으로 보내져야 할 불만.
3. 불만 제기인이 교육감의 결정에 대해 교육위원회 및/또는 가주 교육부에 이의 제기할 권리.
4. 불만 제기인이 가용한 민사법을 통해 해결을 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5. 교육구의 불만 제기절차의 무료 사본을 받아보기 위해 연락해야 할 학교 인사.

**당신 또는 자녀가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장애, 성별, 성별 정체성, 성별 표현, 국적, 인종 또는 민족, 종교, 성적 지향 또는 이러한 실제 또는 인식된 특징 가운데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을 가진 개인이나 그룹과의 연관을 포함하여 실제 또는 인식된 특징에 근거한 차별대우, 괴롭힘, 폭력, 협박 및 약자 괴롭히기***를 주장하는 행동의 해결을 위해 구축된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를 갖고 있다. 일관적 불만 제기절차는 또한 성인교육, 통합된 카테고리칼 보조 프로그램, 이주민 교육, 직업교육, 탁아 및 발달 프로그램, 아동 영양 프로그램 및 특수교육 프로그램에서 주 및/또는 연방 법의 비준수를 주장하는 불만을 다루는 데도 사용된다.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불만제기 절차의 사본을 무료로 제공한다. 불만제기 양식, 추가 정보 또는 도움을 위해선 카테고리컬 프로그램 사무실 (818) 241-3111 내선 457의 신티아 맥카티-포리 박사에게 연락한다.

## 예의 방침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교육위원회 방침 1312.5**

교육위원회는 학교들과 교육구 장소들이 방해 받지 않고 권한 없는 사람의 학교/교육구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질서적인 교육 및 행정적 절차를 유지한다. 교육구 임원들은 동료, 학생, 학부모 및 일반인들을 존중심으로 대하며 마찬가지로 존중되기를 기대한다.

본 방침의 의도는 어떤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고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우리 학생과 교직원들을 위한 안전하고 괴롭힘 없는 환경을 유지하려는 것일 뿐이다. 교육구 학생들에게 긍정적 역할 모델을 보여 주기 위해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예의 바르고 긍정적인 대화를 기대한다. 교육구는 무례한, 배려심없는, 통명스런, 또는 무신경한 행동을 용납하지 않으며 또한 폭발적인, 적의에 찬 또는 공격적 행동이나 고성, 음란 또는 비위 거슬리는 말도 용납하지 않으며 교육구는 이러한 노력에 있어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일반인의 협조를 구한다.

교육구 교직원들은 교육구 방침을 위반하는 방해적 행동을 인식하고 해결하도록 훈련을 받으며 직원, 학생 및학부모는 본 방침에 대해 통고 받고 무례한 행동을 다루기 위해 그들에게 가용한 적절한 조치를 제공받는다.(법적 참조: 교육법 32210, 44014, 44810, 44811 및 가주 형사법 243.5, 415.5, 626.8, 627.7)

## 안전한 학업 장소법

교육구는 형법 422.55 및 교육법 220에 언급된 장애, 성별, 성별 정체성, 성별 표현, 국적, 인종, 민족, 종교, 성적 지향 또는 이러한 실제 또는 인식된 특징 가운데 한 두 가지를 가진 개인이나 그룹과의 연관을 포함하여 실제 또는 인식된 특징에 근거한 차별, 괴롭힘, 폭력, 위협 및 왕따로부터 자유스러운 학업환경 유지에 헌신한다.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왕따 행위를 목격하는 모든 교직원은 안전한 이상 즉시 중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구 내 학교에서 발생 하는 학교활동 또는 학교 등교와 관련하여 차별, 괴롭힘, 폭력, 위협 또는 왕따 행위를 하는 학생은 퇴학에까지 이르는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다. 사건을 보고하기 위해, 또는 교육구의 반차별, 반위협, 반괴롭힘, 반왕따 방침 사본을 받기 위해선 학생지원 서비스부 디렉터 (818) 241-3111, 내선 285에 연락한다.

## 학교 책임 보고서(SARC)

1988년 11월 이후 가주 교육법 35256은 주 기금을 받는 모든 공립학교는 SARC를 작성하고 배부 하도록 요구한다. 연방 법 낙오생 없는 교육*(NCLB)*은 주 정부가 2005년 1월 1일부로 법을 수정하여 모든 사립, 비종교적 학교들이 교육법 33126에 따라 SARC를 작성하도록 요구한다. 보고서의 목적은 학부모와 학교 공동체에게 각 공립학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SARC는 학교의 목표 달성을 향한 진도를 보여주는 효과적인 방편이다.

SARC는 학교와 그 학생들에 대한 배경정보를 제공하는 프로파일을 포함하며 학교의 사명, 목표 및 성취를 개요한다. 주 법은 SARC가 인구통계학적 데이타, 학교 안전과 학업 분위기 정보, 교육 데이타, 졸업률, 학급규모, 교사와 임원 정보, 교과과정과 수업 정보, 졸업후 준비정보 및 재정과 지출 데이타 모든 것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최근에 통과된 가주 법은 SARC가 교사의 비전공 과목 담당, 충원되지 않은 교사수, 충분한 교과서 및 기타 교재의 유무 및 양호한 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보수를 열거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NCLB는 SARC가 가주 학업성취 표준을 달성하는 학생들의 적절한 연례 진도, 타이틀 I 개선 프로그램, 고교 졸업률 그리고 2004-05에 출판될 SARC부터는 높은 유자격 교사들이 핵심 과목을 가르치는 범위에 관한 보고를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인터넷 접근이 가능한 학부모는 교육구 웹사이트 www.gusd.net/sarc에 들어가면 최근의 SARC 정보를 볼 수 있다. SARC의 사본이나 번역은 요청시 교육구의 대외 정보 부서 또는 온라인 www.sarconline.org에서 구할 수 있다. 추가적 정보가 필요 시에는 학교나 교육구 사무실에 전화로 학교 방문을 예약하여 학교 행정관 및 임원을 만날 수도 있다.

## 학생의 사진 및 비디오 촬영

학사년도 동안, 학생들은 간혹 교육 프로그램, 행사 또는 활동들에 대해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홍보를 위해 뉴스 매체에 의해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된다. 교육구는 주 법에 준하여 뉴스 매체 대표들이 뉴스 보도를 위해 학교에 와서 학생들을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뉴스 매체에 협력한다. 학생들은 또한 교육구에 의해 성취도 인정, 표창, 교육구 프로그램, 행사 및 교육위원회 발표의 취지로 교육구에 의해 사진 촬영 및/또는 비디오 테이프에 촬영될 수도 있다. 학생들은 허가없이 교직원의 사진을 찍는 것이 금지된다.

우리는 학생과 그들 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동시에 뉴스 매체가 우리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와이미지(사진 및 비디오테이프)를 발표할 필요성도 인식하며 법에 따라 교육구는 또한 언론매체의 뉴스보도 노력을 돕도록 협조할 책임이 있다.

자신의 자녀가 뉴스 매체, 교육구/학교 그룹들 또는 기타 교육구가 승인한 그룹에 의해 촬영된 회보, 학교/교육구 웹페이지 및 다양한 출판물(예, 학교 신문)에 사용되는 사진 또는 비디오 영상에 노출을 원치 않는 학부모는 양식 6 을 작성하여 교장에게 제출한다.

## 가주 고등학교 졸업시험 (CAHSEE)

교육법 48980(e)항에 따라 학부모는 12학년을 마치는 각 학생은 졸업장를 수여 받기 위해 가주 고등학교 졸업시험에 합격할 것을 요구됨을 통고받는다. 이 시험(CAHSEE)의 목적은 학생의 고등학교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며 그것은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읽기, 쓰기 및 수학의 내용 표준에서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장애생들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들은 졸업장을 받기 위해선 가주 고교 졸업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가주 고교졸업시험은 각 학생의 개별교육 계획안(IEP) 또는 504계획안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편의 제공을 받으며 실시될 수 있다. 학생의 IEP 또는 504 계획안이 졸업시험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키는 조절을 허용하는 경우, 학생은 그 조절을 받을 수는 있으나 시험에서 합격점을 받게 되면 교육구가 승인하는 시험면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교육구 방침 6162.52 가주 고교졸업시험 면제 참조). 모든 특수교육 학생들은 학생의 IEP가 고등학교 졸업장 취득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아닌 이상 가주 고교 졸업시험을 치러야 한다.

**2015-2016 학사년 가주 고등학교 졸업 시험(CAHSEE) 시험일**

| 학년 | 영어 | 수학 |
|---|---|---|
| **12** | 2015년 10월 6일, 화요일 | 2015년 10월 7일, 수요일 |
| **11 및 12** | 2015년 11월 3일, 화요일 | 2015년 11월 4일, 수요일 |
| **12** | 2016년 2월 2일, 화요일 | 2016년 2월 3일, 수요일 |
| **10 – 12** | 2016년 3월 15일, 화요일 | 2016년 3월 16일, 수요일 |
| **12 + 벌충 시험(10/11 학년)** | 2016년 5월 10일, 화요일 | 2016년 5월 11일, 수요일 |

CAHSEE의 한 부문 또는 양 부문에 불합격한 학생들을 위해 일년 내내 다른 시험 날짜들이 계획된다.

## 건강한 학교

**학교 석면 안전:** 교육구는 1986년 의회에서 통과된 석면위험 비상대응 법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들을 계속 충족시키고 있다. 그 법은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건축물을 밝히고 그 물질의 관리 또는 제거 계획안의 수립을 요구한다.

다년간 석면은 방열 및 방화제로서 사용되었으며 일부 학교들은 아직도 석면을 내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물 거주인들로부터 떨어진 저장실이나 천정 공간에 국한되어 있다.

각 학교의 석면 관리안은 건물 안전검사 보고서와 함께 해당 학교 교무실에서 사본을 받어볼 수 있다.

**2000년 건강한 학교법:** 2000년 건강한 학교법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매년 교직원, 학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교육구의 살충제 살포 계획에 관하여 서면으로 통고하도록 요구된다. 2015-2016 학사년에 대해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해충 관리 서비스를 위해 주 정부 면허 하청업체인 듀이 해충관리 회사와 계약을 맺었으며 필요시 아래의 살충제들이 2015-2016년 동안에 사용될 수 있다.

| 살충제명 | 주성분 | 환경보호기관 |
|---|---|---|
| Dragnet | Permethrin<br>(Fleas) | 279-3062 |
| Advion | Indoxacarb<br>(Ants-Cockroach gel bait) | 352-652 |
| Fusilade II | Fluazifop-P-butyl<br>(Post-emergent weed control) | 100-1084 |
| Maxforce | Hydramethylnon<br>(Ants-granular-exterior only) | 432-1433 |
| Roundup Pro Max Herbicide | Glyphosate<br>(Weed control) | 524-579 |
| Snapshot | Trifluralin<br>(Pre-emergent weed control) | 62719-175 |
| Masterline | Bifenthrin<br>(Termites, cockroaches, sowbugs, spiders) | 73748-7 |
| Terro | Sodium Tetraborate Decahydrate<br>(Ants-gel) | 352-746 |
| Tim-bor | Disodium Octaborate Techtrahydrate<br>(Termites-wood destroying insects) | 64405-8 |
| Ultra Pure Oil Insecticide | Fungicide, Insecticide, Miticide | 69526-5-499 |

살충제에 대한 추가 정보는 가주 살충제 규정국 웹사이트 www.cdpr.ca.gov에서 알아볼 수 있다.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위험 수준이 warning(경고) 또는 danger(위험)란 말이 들어 있는 살충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살충제는 사용되는 경우, 가장 안전한 caution(조심)이란 범주에 속하는 것이며 아동들이 없을 때 살포된다. 살포인은 매년 안전 훈련을 받고 미국 환경보호기관(EPA)의 라벨 지시사항을 엄격히 준수하며 꼭 필요시에만 살충제를 살포한다.

개별적 살충제 살포에 대한 통고를 받기 위해 교육구에 등록할 기회를 갖기 위해선 교장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 인터넷 사용/전자 정보 서비스 및 수용 가능한 사용 방침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보다 더 최신 과학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르침과 배움의 기회를 증진시키고 있다. 정보자원에 보다 더 접근하게 함으로써 우리들은 세계를 우리 학생들에게 가져오는 것이며 그 결과 그들은 더 높은 교육에 대해 그리고 경력의 시작에 보다 더 잘 대비될 것이다.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교육구 웹사이트에 정보를 게시하는 것은 일정한 법적, 윤리적 및 도덕적 책임을 수반한다. 사용자는 행정규정 및 그에 수반하는 전자 정보 서비스(EIS) 사용 동의를 준수해야 한다(법적 참조: GUSD BP 1113, AR 1113, BP 6163.4)

우리의 주요 책임의 하나는 사이버 폭력을 방지하는 것이다. 사이버 폭력에는 전화, 컴퓨터 또는 기타 무선 커뮤니케이션 기기 등을 포함하나 이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인터넷, 소셜 미디어 또는 다른 테크놀러지에 괴롭히는 말, 직접적 위협 또는 기타 해로운 글, 소리 및 영상 전송이 포함된다. 사이버 폭력에는 또한 타인의 평판에 먹칠을 하기 위해 타인의 전자 어카운트에 침투하여 그의 신분을 가장하는 것이 포함된다(법적 참조: 가주 교육법 49800, 48900.2, 48900.3, 48900.4, 48900.7 또는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교육위원회 방침 5131C)

학생들은 수업중 교정에서, 학교 후원활동 참여 동안 또는 교직원의 감독이나 통제 하에 있을 때, 휴대 전화, 스마트폰, 랩탑 컴퓨터, 테이블 기기 또는 기타 다른 커뮤니케이션 도구같은 커뮤니케이션 기기의 소지가 허용된다. 전자 기기는 교장이 판정하는 학교 관련 비상 사태(예: 고정폐쇠, 지진 등) 또는 보건 상의 문제 발생시 사용될 수 있다. 추가로 개인 기기들은 교장에 의한 지정에 따라 학업적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하나의 전자정보 서비스로서 인터넷은 개방된 세계적 정보의 교환과 컴퓨터 자원을 공유하는 통신망 이다. 인터넷은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특유한 일생에 걸친 학습 자원을 제공한다. 그것은 사용자들에게 자원의 세계가 가능하도록 고안된 것으로서 적절한 자료들의 선택 책임은 사용자에 달려 있다.

대학, 공공 및 사립 연구소, 정부기관 및 기업체와 같은 곳으로부터의 정보는 일반적으로 학생용으로서 매우 적합하며 적절하다. 그러나 부적합한 자료 역시 "정보망"에 잠복하여 있으며 학생들은 인터넷을 탐험하는 동안 바람직하지 않은 자료들에 접할 수도 있다. 비록 교육구는 학생들의 사용을 감독한다고 하여도 학생들이 접하는 모든 자료들의 완전 통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비록 통제하고 있다고 하여도 학생들은 인터넷과 기타 전자정보 서비스(EIS)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에 접할 수 있다. 이는 윤리적 표준을 고수하는 학생들에게는 유리하다. 교육구는 학생들에게 전자정보 자원의 윤리적이며 적절한 사용을 가르치고 있으나 자료 선택에 있어서 부적절한 행동과 공민 정신을 보이는 학생에게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정학 및 퇴학 가능성이 포함되는 다른 훈육조치가 부과될 수도 있다.

인터넷 사용은 전산망의 복잡한 제휴를 통하여 조정된다. 전산망의 원만한 운영은 엄격한 사용 지침을 준수하는 단말기 사용자들의 적절한 품행에 달려있다. 이 지침은 사용자들이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책임들을 숙지하도록 마련된 것이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이 학습 도구의 적절하고 올바른 사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것이 기대된다.

교육구 컴퓨터를 통한 전자정보 서비스 사용이 허용되기 전에 학생들은 다음 사항들을 이행해야 한다:

- 교육구의 올바른 사용 방침에 관한 지시를 받는다.
- 사용자로서의 책임에 대해 배운다.

###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의 적절한 사용 방침

### 사용 조건 및 규칙

1. **적절한 사용** :
   가) 전자정보 서비스의 목적은 독특한 자원과 협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조사연구와 교육의 지원에 있어서 대화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사용자로서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교육구의 교육적 사용 목적을 지원하고 품행이 그것과 일치해야 한다. 모든 전자 정보 서비스의 사용자들은 교육구의 규칙 및 올바른 사용 방침을 준수해야 한다.

나) 연방 또는 주정부의 법규에 위배되는 모든 자료들의 전달은 금지된다. 여기에는 저작권이 있는 자료, 협박적, 음란한 자료 또는 기업비밀로 보호된 정보가 포함되나 이것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다) 상업적 목적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라) 제품 광고 또는 정치적 로비활동을 위한 사용은 금지된다

2. **권리가 아닌 특전** :
전자정보 서비스의 사용은 권리가 아닌 특전이다. 이들 조건들과 규칙들의 위반을 포함한 부적절한 사용은 사용자의 특전 취소를 초래한다. 교육구는 적절한 사용을 규정할 권한이 있으며 어느때든 사용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3. **감독** :
교육구는 캠퍼스에 있는 동안 교육구 소유이건 개인 것이건 테크날러지의 어느 특정한 사용의 적합성을 판정하기 위해 모든 자료들을 검토하고 사용자의 활동을 주시 감독할 권한을 보유한다.

4. **소셜 미디아 감독** :
학교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소셜 미디아 모니터링 시스템인 Geolistening과 계약하였다. 가주 교육법 49073.6에 대한 준수로, 교육구는 다음을 이행할 것이다: "학생이 18세가 된 후 1년 또는 학생이 교육구, 카운티 교육부 또는 챠터 스쿨에 더 이상 등록되지 않은 1년 후 어느 쪽이 먼저이든 소셜 미디아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파기하고 그 기록을 유지한다."

5. **예의** :
학생들은 전자정보 서비스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드려지고 있는 예절의 규율들을 준수하길 바란다. 여기에는 이들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가) 욕설, 비속어 또는 기타 부적절한 언어사용을 금지한다.
나) 타인 매도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다.
다) 연방 또는 주정부의 법규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라) 개인 주소나 전화 번호를 밝히지 않는다.
마) 전자우편은 사적인 것이 못된다. 시스템 사용자들은 모든 메일에 접속할 수 있다 부당한 사용이나 불법적 활동과 연관되거나 그것들을 지원하는 메시지는 당국에 보고되며 사용자는 사용 특전을 상실하게 된다.
바) 다른 전산망 사용자를 방해하는 식으로 전산망을 사용하지 않는다.
사) 전산망을 통한 모든 통신과 정보는 사적 재산으로 간주되므로 편집, 손상 또는 삭제해선 안 된다.

6. **무보증:**
교육구는 교육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명시 또는 함축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입는 어떤 피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안는다. 여기에는 교육구의 소홀 또는 사용자의 실수나 망각으로 인해 야기된 지연, 전달 실패, 혼합 전달 또는 서비스의 차단으로부터 일어나는 데이타 상실이 포함된다.

인터넷을 통하여 얻어진 정보의 사용은 사용자 자신이 거기에 수반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교육구는 습득한 정보의 정확성과 질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 모든 사용자들은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그 출처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7. **보안:**
가) 컴퓨터 시스템의 보안은 특히 그것이 다수의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경우 최우선 사항이다. 사용자는 타인이 자기의 암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암호는 시스템 보안을 위해, 그리고 사용자의 특전과 시스템의 지속적 사용을 위해 보호되어야 한다.
나) 전자정보 서비스상에서 잠재적인 보안 문제를 찾아 낼 수 있다고 믿는 학생들은 교사나 행정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다른 사용자들에게 그것을 해 보여서는 안된다.
다) 전산망 보호장치의 우회, 소프트나 하드웨어의 구성 조작 또는 시스팀 행정원으로 위장하여 어떤 전자정보 서비스에 들어가려는 시도는 사용자 특전의 취소를 초래하고 후속 훈육조치가 따르게 된다.
라) 보안 상의 위험인으로 판별된 사용자 또는 교육구나 다른 컴퓨터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켰던 내력이 있는 사용자는 교육구에 의해 전자정보 서비스 사용이 금지될 수 있다.

8. **훼손 및 괴롭히기**
가) 훼손과 괴롭힘은 사용자 특전의 취소를 초래하며 다른 훈육조치가 취해진다.
- 훼손은 다른 사용자의 데이타 또는 교육구 전자정보 서비스의 자원을 손상, 수정하고 파손하려는 악의적 시도로 정의된다. 여기에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옮기거나 만드는 것이 포함되며 이것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 괴롭힘은 다른 사용자를 곤질기게 추근거리거나 타인의 일에 간섭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여기에는 상대방이 원치 않는 전자 우편 발송이 포함되며 비단 이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9. **사용절차**
가) 학생 사용자들은 교육구 전자정보 서비스 사용에 앞서 항상 그들의 교사들로부터 승인을 받어야 하며 학생들은 서면 또는 학급의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

나) 모든 사용자들은 컴퓨터 장비 사용에 있어서 균등한 권한을 가진다. 그러므로 사용자들은 게임을 한다든지 비학업적 활동을 위해 컴퓨터 자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사용자들은 교육구가 제공하는 종이 및 잉크 카트리지 같은 공급물들을 낭비하거나 가져가서는 안 된다.

**10.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자료들:**

사용자들은 사용자, 학부모, 교사 및/또는 행정인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던가 부적절하거나 혐오감을 준다고 느끼는 자료들과 조우할 수도 있다. 만일 학생들이 우연히 그런 자료들과 조우할 경우 즉시 빠져나와 교사나 행정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한 자료 접속을 시도하지 않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이다. 우연히 조우할 경우, 그 자료를 다른 사용자들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11. 정보 테크놀러지 수색:**

교육구의 전자정보 시스템 사용의 한 조건으로서 교육구는 교육구 시스템의 장비에 사용되는 모든 자료(소프트웨어, 부속장비 등)을 검토하고 교육구 캠퍼스에서 사용한 학생 개인의 컴퓨터를 수색하고 장비와 네트워크에 대한 특정 사용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사용자의 활동을 점검할 권리를 어느 때든 보유한다. 교육구의 모든 캠퍼스에서 테크놀러지에 대한 부적절한 사용은 사용 특전의 상실 및/또는 징계조치를 초래할 수도 있다.

**12. 학부모의 학교 통고:**

학부모는 자녀에게 교육구 장비를 통한 검색 여과된 인터넷(www) 접속 기회가 주어지길 원치 않는 경우 서면으로 교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 인터넷 안전 정보
# 2015-2016

## 학생 인터넷 안전에 관한 학부모 정보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업환경을 제공하는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학생들의 부적절한 인터넷 사용은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잠재적으로 해로우며 저희는 이 도전에 대해 귀하의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전국적으로 ***학교들은 인기있는 소셜네트워킹 웹사이트에 게시된 전자 테크놀러지를 사용하여*** 쓰여진 메시지의 결과로서 학생들의 부정적 행동이 증가함을 목격합니다. 다수의 사이트들은 학생들이 통상적으로 얼굴을 마주하는 대화에선 하지 않는 말을 다른 학생들과 주고 받으며 게시하는 즉석 메시지를 전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기는 증가하고 있는 듯합니다. 예를들면 페이스북(Facebook.com)은 가입자가 10억명을 넘었다고 하며 세계적으로 학생들 간에 가장 인기있는 "메시지 교환" 장소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들 웹사이트들의 일부는 아동 약탈자, "사이버 불리" 및 사기꾼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한 이들 웹사이트의 내용을 감시할 성인 책임자는 없으며 일부 학생들은 온라인 불링에 참여하거나 다른 학생들을 해치기 위해 사이트를 사용 합니다. 소위 "사이버 불리" 라는 학생들은 9-14세 사이의 아동들로서 결과를 목격함 없이 타인을 해치기 위해 온라인의 익명성을 이용합니다. 온라인으로 왕따 당한 학생들은 자신의 인터넷 사용이 금지 당할까 두려워 간혹 이러한 사건들을 보고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 밖에서 성인들이 청소년으로 가장하여 학생들의 채팅룸에 접근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접촉은 간혹 비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의심하지 않는 학생들은 약탈자가 학생의 집 또는 학교 주소를 알아낼 수 있는 많은 개인정보를 게시하여 약탈자의 쉬운 표적이 됩니다.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여러 소셜 네트워킹 웹사이트 사용을 학교 컴퓨터로부터 차단하였습니다. 저희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이러한 부적절한 자료들을 계속 차단할 것입니다.

학부모는 자녀가 인터넷 상에서 무엇을 쓰고 있으며 상대방은 어떤 답을 게시하는지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웹사이트들은*** 공공 영역이므로 그곳의 게시물들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대부분의 게시물은 그렇지 않지만 일부는 부도덕적이거나 불쾌하거나 불법적인 것입니다. 원하신다면 귀하께서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사이트들에 접속하여*** 조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비스는 무료***이며 사용자는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단 등록되면 귀하께서는 이름과 이메일을 통해 자녀의 등록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귀하의 거주 시 이름을 입력하여 조사 결과를 범위를 좁힐 수 있으며 자녀가 웹사이트에 게시한 개인정보, 메시지, 일기 및 사진 종류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언 및 정보출처**

저희는 귀하께서 인터넷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자녀와 이야기 나누시도록 권고합니다. 자녀가 ***Facebook, Instagram, Twitter*** 또는 그와 유사한 웹사이트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요. 자녀가 귀하의 승인 하에 그러한 사이트를 사용 하고 있을 경우, 개인 및 신분이 노출될만한 정보가 게시되지 않도록 자녀의 프로파일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저희는 자녀의 인터넷 사용 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규칙 및 지침을 정하시도록 권장합니다. 일부 웹사이트는 인터넷 안전을 위한 지침을 학부모 또는 가족에게 제공합니다. 예: www.commonsensemedia.org의 Commonsensemedia.org, www.safekid.com의 SafeKids.com 및 www.webwisekids.org 의 Web Wise Kids , 전화 866-WEB-WISE, 이메일 webwisekids2@aol.com)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우리 학교 내에 계속하여 인터넷 안전을 제공할 것입니다. 학부모 역시 가정에서 인터넷 사용을 감독할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귀하의 지원 및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가주 교육법 학부모 통고 요건
# 2015-2016

가주 교육법 48980항은 각 학부모나 후견인에게 다음의 가주 교육법 및 기타 관련법 조항들에 관해 통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이것은 귀하의 편의를 위해 의역된 것이며 특정 조항에 대한 설명이나 원문은 각 학교의 행정관에게 요청하여 볼 수 있습니다.

221.5조 --- 경력 카운슬링: 7-12학년생들에게 기회균등의 원칙 하에 주어지는 직업 상담 및 학과 선택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학부모에게 알린다. 이 조항은 또한 학부모에게 상담이나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알린다.

32255조 --- 동물들에 대한 해롭거나 파괴적인 사용을 거부할 권리: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들은 그들이 동물들에 대한 해롭고 파괴적인 사용으로 생각되는 학습활동에 대한 참여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대체 프로그램 또한 다루어진다.

35183 및 35183.5조 --- 복장 규칙/갱 복장: 교육구들에게 "갱 관련 옷차림"을 방지하기 위한 복장 규정 채택의 권한을 부여하며 또한 교육구들이 학생들의 전교 교복 착용을 요구하는 복장 규정 방침 채택의 권한을 부여한다. 교육구가 복장 규칙을 채택하거나 유니폼 착용을 요구하는 경우, 학부모는 적어도 6개월 전에 통고 받고 경제적으로 불우한 학생에 대해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나아가서 35183.5조는 또한 학교가 수업일 활동 동안 옥외용 햇볕 차단용 복장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며 의사의 메모나 처방 없이 수업일 동안의 선스크린 사용을 허용한다.

35291 및 35291.5조 --- 훈육 규칙: 각 학교는 학교 위원회에 의해 수립된 훈육 규칙을 가진다. 교육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이 규칙들은 각 학교와 교육구 사무실에서 받아 볼 수 있다.

32280조 이하--- 포괄적 학교 안전안: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의 각 학교들은 재해 대비안 및 비상시 절차를 포함하는 포괄적 학교 안전안을 수립한다. 각 학교 교무실에는 사람들이 읽어 볼 수 있도록 사본을 비치한다. 각 학교는 정기적으로 화재 및 비상시 훈련을 실시한다 .

39831.5조 --- 학교 버스 안전: 과거, 학교버스로 통학하지 않은 학생의 학부모/후견인은 학생 등록시 명시된 학교 버스 안전에 관한 정보를 받는다. 이는 유아원, 유치원 및 1-6학년 모두에 해당된다.

46010.1조 --- 대외비 의료 서비스: 현행 법은 학교 당국이 7-12학년 학생들이 학부모의 동의 없이 내밀스러운 의료 서비스를 받을 목적으로 수업 불참하는 것을 허용한다.

46014조 --- 종교적 훈련: 교육위원회는 학부모나 후견인의 서면 승락 하에 종교적 활동이나 교육에 참가하기 위한 학생의 결석을 허용할 수 있다.

48206.3조 --- 일시적 장애; 개별지도: 일시적인 신체 장애로 인해 정규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거주지 교육구로부터 교육 제공을 받는다

48208조 --- 일시적 장애; 학부모 통고: 일시적 신체 장애생의 학부모나 후견인은 유자격 병원이 위치한 해당 교육구에 학생의 존재를 알릴 책임이 있으며 그 학생에 대한 적절한 교육 제공은 그 교육구의 책임이다.

48900.1조 --- 학부모의 요구되는 수업 참여: 교육위원회 방침은 교사가 그에 의해 정학된 학생의 학부모 또는 후견인이 학생의 클래스에서 수업일의 일부에 참석하도록 하게 한다.

48904조 --- 의도적 비행 책임: 미성년자의 학부모나 후견인은 타인의 상해나 사망 또는 학교 재산의 파손을 초래하는 미성년자의 의도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며 또한 학생에게 대여되었으나 의도적으로 반납되지 않은 학교 재산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학부모는 정부 규약 53069.5조에 규정된 최대 액수까지의 변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교육구는 피해액이 지불되거나 물건이 반납되거나 또는 금전 지불 대신의 자원봉사 근무 프로그램을 마칠때까지 평점, 학위 또는 성적 증명서의 발급을 보류할 수 있다. 학생이 타 교육구로 전학하는 경우 그 교육구 역시 이전의 교육구로부터 통고서를 받고 평점, 학위 또는 성적증명서의 발급을 보류할 수 있다. 받아 들이는 교육구는 이들의 보류 결정을 학부모에게 통고해야 한다.

48906조 --- 학생의 경찰 인계: 학교 인사가 자녀를 교정으로부터 내보내려는 목적으로 경찰에게 인계시 학교 인사는 학생이 의심되는 아동학대의 희생자로서 보호되는 경우를 제하고는 학부모나 후견인에게 즉시 통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경찰에 보호되는 경우, 경찰은 학부모/후견인에게 통고한다.

48980*(c)*조 --- 단축 수업일 및 교원 계발 휴교일: 학부모들이 단축 수업일 또는 학생 휴일인 교원 계발일들에 대한 통보를 받도록 요구한다(늦어도 한 달 전).

48980(*k*)조 --- ***AP*** 시험료: *AP*과목을 택하고 과정 말에 *AP*시험을 치를 계획인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은 *AP* 시험료 지불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49063조, 가족의 교육권 및 사생활법(FERPA).5 ***CCR 431(e)***항 --- 학부모와 학생의 사생활권 통고: 연방 및 주법은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들에게 어떤 사생활권 및 서류 접근권을 허용한다. 교육구가 유지하는 개인적으로 판별이 가능한 모든 개인적 서류에의 완전 접근이 다음 인에게 허용된다:
1) 17세 및 그 이하의 학생의 학부모
2) 학생이 세금 목적상. 부양 자녀로 되어 있는 18세나 그 이상의 학생의 학부모
3) 16세 나 그 이상의 학생 또는 고교졸업 후의 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유자격생이어야 함)

학교 기록은 영구 기록(학생의 법적 이름. 생년월일 .등록일. 과목명. 성적). 의무적 임시 기록(시험 점수를 비롯한 학생의 발전 및 교육 진전 내력) 및 승인된 기록(3년 이상된 표준 시험 점수. 일상적 징계 통고)으로 되어 있으며 교장이나 대리는 학생 기록의 유지에 책임이 있다.

학부모나 유자격 학생들은 교장에게 서면 요청을 통해 개인 학생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교장은 서류 해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관이나 적절한 유자격 직원이 있을 때에 마추어 예약을 한다. 학부모가 학교측이 유지하고 있는 어떤 정보의 정확성이나 적절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들은 비공식적으로 교장에게 교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학부모. 성인 학생 및 교장이 문제되는 정보의 교정이나 삭제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경우 학부모는 교육법 49070조에 개요된 절차에 입각하여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학교 기록과 관련된 교육구 방침 및 절차는 각 학교의 교장으로부터 얻을 수 있으며 검토를 요청 할 수 있다. 학생이 다른 교육구로 전학할 때 그 교육구의 요청에 따라 기록이 전달될 수 있다. 학부모 또는 유자격 학생들은 복사비로 페이지당 25센트에 요청하는 기록의 사본을 받을 수 있다.

49073조 --- 개인 신상 정보 공개: 학부모나 유자격 학생이 학교측에 개인 신상 정보 공개의 금지를 요청하지 않은 이상 다음 신상 정보들은 어느 학생이나 학부모에게도 공개될 수 있다.

-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생년월일 및 출생지
- 학업 전공분야
- 공식 인정된 활동 및 스포츠 참여
- 스포츠 팀 멤버의 체중 및 신장
- 출석일 수
- 수여 받은 학위나 상
- 전에 다니던 학교

신상 정보는 공공. 비영리 단체에 방출될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고용인. 예상되는 고용인. 언론 매체. 고등 교육기관 또는 사립 상업이나 전문학교의 대표 외에는 사립 영리 단체에 방출될 수 없다.

***군 불입대 --- 고등학교 11, 12학년의 신상 정보는 또한 군대, 정부 신규 채용관 및 징병 서비스 시스템에 제공될 수 있다. 본 문단 및 앞서 열거된 기관들에 신상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원치 않는 학부모는 삽입지에 포함된 양식 7을 작성하여 2015년 10월 2일 전에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49407조 --- 치료 책임: 아동이 다치거나 아플 때 그리고 그것이 학교측의 소견으로 어느 정도의 치료가 요구된다고 생각하나 학부모나 후견인이 연락이 안 되는 경우. 학부모나 후견인이 사전에 응급조치 외의 어떤 의료도 거부한다는 반대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이상 학교는 비상 의료 조치(준의료 서비스)를 취하고 관련 정보를 알린다. 학교는 그러한 응급 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49500조 --- 무료 및 할인 급식: 매 수업일에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영양이 있는 무료 또는 할인 식사가 제공됨을 학부모에게 알린다. 모든 교무실에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으며 작성된 신청서는 교무실에 제출하거나 직접 급식부로 우송해야 한다.

51101조 --- 학부모 및 후견인의 권리: 학부모와 후견인은 자녀의 교육에 참여할 권리와 함께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학교측은 학부모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51512조 --- 전자 청취 및 녹음 기기: 이러한 기기의 사용은 수업 과정을 방해하고 학교 훈육을 저해하므로 학생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교장 또는 교사로부터 사전 승인 없이 학급에서의 기기 사용은 금지된다. 학생이 아닌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그는 경법죄를 범하는 것이며 학생인 경우 그는 적절한 훈육조치를 받게 된다.

51513조 --- 개인 신앙을 묻는 자료: 성별. 가족생활. 윤리 및 종교에 관한 학생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개인적 신앙이나 종교적 실행에 대한 질문이 들어있는 테스트. 설문. 조사는 그러한 것을 실시한다는 통고를 그들에게 하고 그들로부터 서면 승인서를 받지 않는 이상 유치원 또는 1학년부터 12학년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학생에게도 실시되지 않는다.

56301조 --- 특수교육; 아동 찾기 시스템: 각 교육구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학생들을 판별할 것이 요구된다.

# 학부모 및 가족 여러분의 주의를 요망합니다!

## 자녀가 학교에 있는 동안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우선 식수, 구급약 및 기타 비축물들을 갖추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가족의 비상시 물품들을 점검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가정의 비상사태 대비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818-243-3141로 거주 지역의 미 적십자사 지부에 연락하십시요.

- **학교는 안전한 장소이다** -- 비상사태 발생시 학교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 가운데 하나이다. 교사, 행정관 및 기타 직원들은 학생들을 감독, 상담하고 돌보도록 훈련되었으며 학교 건물들은 엄격한 지진 및 화재 안전 표준에 따라 건축되었다.

-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 -- 비상사태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를 떠날 필요가 있을 경우, 교직원은 각 아동이 캠퍼스의 특정 장소에서 학부모, 친척 또는 비상 카드 상에 학부모가 지정한 다른 사람에게 인도되도록 질서정연한 계획안을 따른다.

- **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들** -- 학부모 또는 대리인이 장시간 학생을 데려갈 수 없는 경우, 학생은 학부모/대리인이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감독 하에 남아 있게 되나 가능한 한 아동들을 신속히 데려가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학생들은 보다 큰 안전 가능성을 위해 다른 학교 또는 학교 외부 장소로 이동될 수도 있으며 장소는 게시될 것이다.

- **전화 사용** -- 지진 또는 다른 대재앙 발생시, 전화는 학교에 연락하는 데 있어 불통이거나 계속 통화중일 수 있다. 이런 경우, 전화를 사용하지 말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학교에서 아동을 데려 가도록 한다. 전화 통신이 가능할 때 교육구는 24시간 비상 정보 "핫라인"을 가동시킬 것이며 번호는 818-241-3111이다.

- **케이블 TV 및 시 라디오** -- 비상 정보 및 학교 관련 최근 소식은 가능한 대로 신속히 차터 케이블 채널 15 및 AT & T Greg TV 채널 99(글렌데일 학교 교육 채널)를 통해 방송될 것이다. 케이블 채널 6(글렌데일 시)은 지역 사회와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한다. 주의: 케이블 TV 청취는 글렌데일의 차터 커뮤니케이션 가입자들에게 국한되어 있다. 글렌데일 시는 또한 시 지역 내에서 가청 할 수 있는 한정적인 시그널 라디오 방송국(1680-AM)을 운영한다.

- **교육구 웹사이트** -- 비상 정보 및 최신 정보들이 가능한 대로 교육구의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웹사이트 주소: www.gusd.net. 홈 페이지는 사용자에게 적절한 웹사이트을 가르쳐 줄 것이다.

- **라디오 및 TV** -- 가능한 한, 교육구는 기타 라디오 및 TV 방송국과 함께 라디오 방송국 KNX(AM-1070)에 정보를 방송할 것이다. 교육구는 방송 매체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지만 방송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

- **신문** -- 비상시 정보는 글렌데일 뉴스 프레스, 데일리 뉴스 및 크레센타 밸리 위클리를 포함하여 교육구를 커버하는 신문들에 게재될 것이다. 스페인어, 아르미니아어 및 한국어 신문에도 정보를 싣도록 노력할 것이다.

***고무실이 수업일 동안 연락될 수 있는 학부모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최근의 비상시 연락 정보를 갖추고 있도록 하십시요. 비상시 학부모 연락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 학교의 재해 대비안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귀 자녀의 학교 사무실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양식 1 – 학부모 통고요건 수취확인

# 2015-2016

***양식 1은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학생들의 학부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하여 학생의 학교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학생 이름(*정자로 기재*) | 학번 | 학교 | 학년 |
|---|---|---|---|

본 양식을 30 일 이내에 서명하여 귀 자녀의 학교에 제출하여 주십시요. 이는 가주 법(교육법 §48982)에 규정된 대로 귀하께서 학부모 및 학생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해 통고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서명은 어떤 특정 프로그램의 참여에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귀하께서 법이 요구하는 대로 어떤 규정에 대해 통고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학부모 또는 후견인의 서명 | 날짜 |
|---|---|

## 모든 학생들은 본 통고서의 수취를 확인하는 부모/후견인의 서명을 받은 후, 이 부분을 제출해야 합니다.

# 양식 2 – 일관적 불만제기절차 연례통고 수취확인
# 2015-2016

*양식 2 는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학생들의 학부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하여 학생의 학교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학생 이름(*정자로 기재*) | 학번 | 학교 | 학년 |
|---|---|---|---|

본 양식을 30 일 이내에 서명하며 자녀의 학교에 제출하여 주십시요. 이는 귀하께서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윌리엄스/발렌주엘라에 대한 연례 통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서명은 어떤 특정 프로그램의 참여에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귀하께서 법이 요구하는 대로 어떤 규정에 대해 통고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학부모 또는 후견인의 서명 | 날짜 |
|---|---|

## 모든 학생들은 본 통고서의 수취를 확인하는 부모/후견인의 서명을 받은 후, 이 부분을 제출해야 합니다.

# 양식 3 - 전자정보 서비스(EIS) 사용자/학부모 또는 후견인 책임 약정
# 2015-2016

본인은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의 전자정보 서비스 사용에 대한 특정 학교 지침 뿐만 아니라 교육구의 규칙/규정을 이해하며 준수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본인은 이들 규칙과 규정의 위반은 비윤리적이며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음을 이해합니다. 아울러 본인은 교육구의 전자정보 서비스 사용의 한 조건으로서 교육구는 어느 때든 본인이 교육구의 정보 시스템 장비를 통해 사용하는 자료들(소프트 웨어, 주변기기 등)을 검토하고 교육구 캠퍼스에서 본인 개인의 컴퓨터를 조사하고 장비와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특정 사용의 적절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본인의 활동을 주시•점검할 권리를 보유한다는 것을 이해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본인이 어떤 규칙을 위반할 경우, 본인의 전자정보 시스템 사용 특전이 박탈되며 교육구 및/또는 학교의 훈육조치 및/또는 적절한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학생의 학부모 또는 후견인으로서 본인은 본인의 아이가 교육구 컴퓨터 및 전자정보 서비스의 조건, 규칙 및 적절한 사용에 대해 설명한 전자정보 서비스(EIS)의 적절한 사용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음을 이해합니다. 이 서비스는 교육용으로 마련된 것이며 글렌데일 교육구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자료의 차단을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했음을 이해합니다.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 학생 이름(*정자로 기재*) | 학번 | 학교 | 학년 |

| _____ | _____ |
|---|---|
| 학부모 또는 후견인의 서명 | 날짜 |

**모든 학생들은 본 통고서의 수취를 확인하는 부모/후견인의 서명을 받은 후, 이 부분을 제출해야 합니다.**

# 양식 4 – 24 시간 약 복용 스케줄

# 2015-2016

***양식 4 는 집에서 약을 복용하는 모든 아동의 부모가 작성하도록 요청되며 출석 학교의 보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_____ _____ _____ _____

학생 이름(***정자로 기재***) 학번 학교 학년

| | ***약명*** | ***복용량*** | ***복용 목적*** | ***복용 시간*** |
|---|---|---|---|---|
| 1.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2.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_____ _____

처방 의사 이름 주소 전화번호

본인은 본인이 아는 한 상기 정보가 정확함을 보증합니다. 본인은 학교 간호사가 상기 약의 가능한 효능, 부작용, 복용 누락 또는 과다 복용의 징후와 증세에 관하여 아이의 주치의와 상의하는 데 동의합니다.

_____ _____

학부모 또는 후견인의 서명 날짜

_____ _____

주소 전화번호

학교에서 약을 복용해야 할 경우, 귀하의 의사는 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HS25, "학교시간 동안의 약복용 요청(Request For Medication to be Taken During School Hours)"** 이라는 양식을 작성하고 서명해야 하며 약, 복용량 및 시간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요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양식 5 – 수업 면제요청

# 2015-2016

*양식 5 는 인간의 생식을 다루는 학습 단원에서 자녀의 수업 면제를 원하는 학부모만이 작성하여 학교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은 본인의 아이가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 학생 이름(*정자로 기재*) | 학번 | 학교 | 학년 |

주제(topics): _____를(을) 다루는

학과(courses): _____에서 수업 면제되도록 요청합니다.

본인은 상기 수업 면제된 학생들은 그 시간 동안에 도서관 또는 자습실로 가야 됨을 이해합니다.

| _____ | _____ |
|---|---|
| 학부모 또는 후견인의 서명 | 날짜 |

# 양식 6 –학생 이름, 사진, 웹페이지 상의 비디오 영상 및 다양한 출판물의 공공 사용에 대한 허가서
# 2015-2016

***양식 6는 교육구 등록 시 작성되어야 하며 학부모 및/또는 후견인의 요청 시 언제라도 갱신될 수 있습니다. 본 허가서는 귀 자녀가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에 출석하는 동안 효력이 유지될 것이며, 귀 자녀 학교에 연락하여 언제라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 사무실에 제출하여 하십시요.***

_____ _____ _____ _____

학생 이름(*정자로 기재*) 학번 학교 학년

이 양식은 뉴스 매체, 교육구/학교 그룹들 또는 기타 교육구가 승인한 그룹에 의해 촬영된 회보, 학교/교육구 웹페이지 및 다양한 출판물(예, 학교 신문)에 학생의 이름, 사진 및/또는 비디오 영상 사용을 허가하거나 배제하는 둘 중 하나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간혹 교육 프로그램, 행사 또는 활동들에 대해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홍보를 위해 뉴스 매체에 의해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됩니다. 교육구는 주 법에 준하여 뉴스 매체 대표들이 뉴스 보도를 위해 학교에 와서 학생들을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뉴스 매체에 협력합니다. 학생들은 또한 교육구에 의해 성취도 인정, 표창, 교육구 프로그램, 행사 및 교육위원회 발표의 취지로 교육구에 의해 사진 촬영 및/또는 비디오 테이프에 촬영될 수도 있습니다.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학생과 학생 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아래의 2 가지 항목 중 1 가지를 선택하십시요.**

_____ 예, 본인은 본인 학생의 전체 이름, 사진 또는 비디오 영상이 상기 언급된 출판물에 사용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_____ 아니오, 본인은 본인 학생의 이름이 사용되거나 사진 또는 비디오로 촬영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_____ _____

학부모 또는 후견인 서명 날짜

**주의: 본 양식을 학교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모든 출판물 및 매체에 귀 자녀의 이름, 사진 및 비디오 영상 사용을 학교/교육구에 허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양식 7 – 군대, 고용주, 대학에 대한 11/12 학년생 정보제공 금지요청
# 2015-2016

무 낙오생 연방 교육개혁법은 교육구가 군 모병관, 가망성 있는 고용주 및 대학 신입생 모집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때 모든 고등학교 *11 및 12 학년생*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자녀가 고등학교 ***11 및/또는 12 학년생이며*** 글렌데일 통합교육구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를*** 원하실 경우, 아래의 모든 정보를 기재하고 서명하신 후 *자녀 학교위 교장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18 세 이상인 경우엔 부모 또는 후견인이 아닌 학생 자신이 본 양식에 서명해야 합니다. 10 학년 또는 그 이하의 학년에 속한 학생의 정보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아래 양식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청된 모든 정보는 **2015 년 10 월 9 일, 금요일에** 군 모병관에게 제공되므로 아래 양식을 **2015 년 10 월 2 일, 금요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문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학생지원 서비스부, 818-241-3111, 내선 285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고등학교 11 및 12 학년생 정보 보류 요청

**모든** 필요 정보를 정자로 명료히 기재하십시요.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 학생 이름(***정자로 기재***) | 학번 | 학교 | 학년 |

본인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 본인 아이의 이름,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아래 장소에 제공하지 마시요.
(*한 가지 또는 모두에 체크*)

☐ **미국 군대** ☐ **고용주** ☐ **대학**

**학부모 서명**: _____

*__학생 서명__: _____

***(18 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